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1

보건복지부

목 차

1. 평가개요	1
2. 평가결과	4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0
I-1-①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10
I-1-② [민생]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12
I-1-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14
I-1-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16
I-1-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18
I-1-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20
I-2-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22
I-2-②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24
I-2-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26
I-2-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28
I-2-⑤ [민생]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30
I-2-⑥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32
I-3-①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34
I-3-②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36
I-3-③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38
I-3-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40
I-3-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42
I-3-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44
I-4-①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6
I-4-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48
I-4-③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50
I-4-④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52

I-5-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54
I-5-②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56
I-5-③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58
I-6-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60
I-6-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62
II-1-①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64
II-1-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66
II-1-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68
II-1-④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70
II-2-① [민생]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72
II-2-②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74
II-2-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76
II-2-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78
II-3-① [민생]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80
II-3-②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82
II-3-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84
II-4-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86
II-4-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88
II-4-③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90
II-4-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92
II-4-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94
II-5-①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96
II-5-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98
II-5-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100
III-1-① [민생]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102
III-1-②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104
III-1-③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106
III-1-④ 임신·출산 건강지원	108
III-2-①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	110
III-2-②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112

Ⅲ-2-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14
Ⅲ-3-① 취약 노인 돌봄 강화	116
Ⅲ-3-②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	118
Ⅲ-3-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120
Ⅲ-3-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122
Ⅲ-3-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124
Ⅲ-4-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126
Ⅲ-4-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	128
Ⅲ-4-③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130
Ⅲ-4-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132
Ⅳ-1-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134
Ⅳ-1-②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136
Ⅳ-1-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138
Ⅳ-1-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140
Ⅳ-2-① [민생]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142
Ⅳ-2-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144
Ⅳ-2-③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146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148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52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다각도적인 성과지표 관리 및 과제 수립 단계부터 결과까지 환류 과정을 평가

○ 정책 성과·효과 중심의 평가기조 유지

- 평가 항목별 배점에서 정책성과·효과 항목 배점을 55점(100점 만점 중 55%)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정책집행 항목 30점, 정책형성(의견수렴 등) 항목 15점

-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시, 중장기 목표달성도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장기 성과관리를 강화

○ 핵심 민생과제 선정, 집중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견인

-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및 부서별 협업이 필요한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목표 달성도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시 목표치 달성 난이도, 적극적 목표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지적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반영, 이행하도록 환류의 적절성 평가

□ 대면평가 및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공정성 제고

○ 4개 분과*별로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설명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부여, 보다 심층적인 평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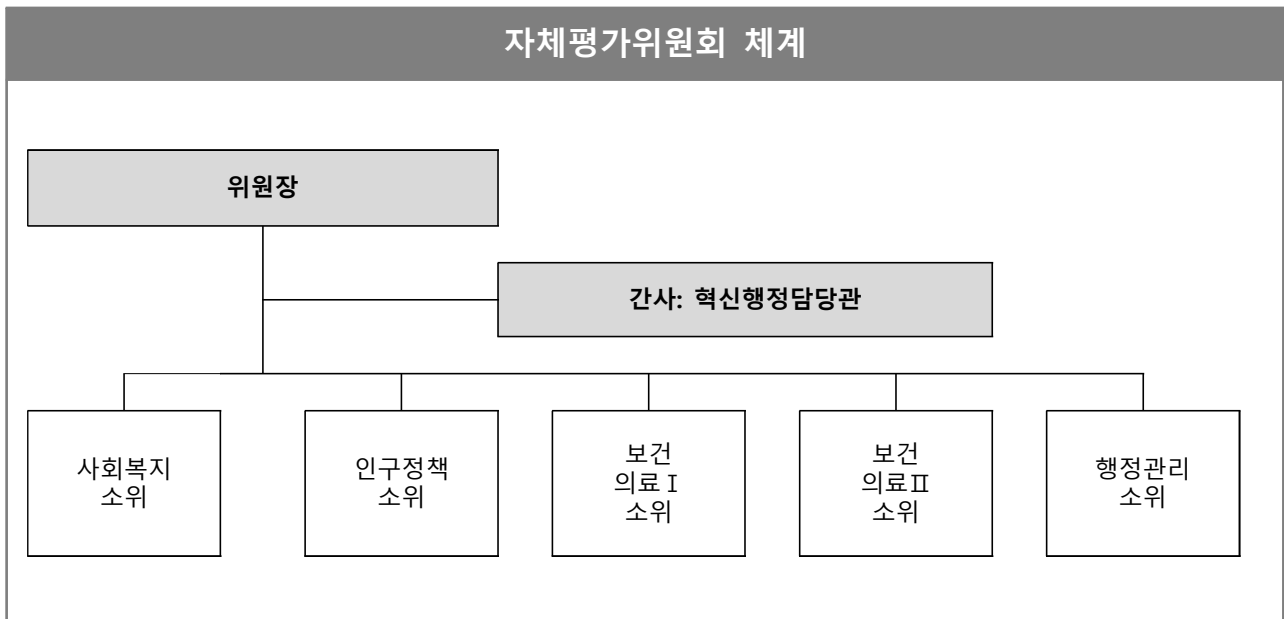
* 사회복지, 인구정책, 보건의료1, 보건의료2

○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각 부서들의 수용률을 제고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별 평가 실시
 - (구성) 내부위원 5인(실장급) 및 민간위원 24인(위원장 1인 포함), 총 29인으로 구성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주요정책(사회복지, 인구정책, 보건의료1, 보건의료2), 행정관리역량 등 총 5개 부문



□ 평가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에 대한 실적설명회를 개최, 과제담당과장-평가위원 간 대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과별 과제 평가
 - 1차 서면 검토 및 분과별 대면 설명,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총 69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형성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 과제의 적절성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적절성	▶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정책집행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 정책추진 일정 준수 여부(분기별)
	정책소통 충실성	▶ 정책 홍보 활동의 적극성 ▶ 정책 홍보 성과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과정의 적절성 ▶ 여건 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 부처 내·외부 협의·조정 적절성
정책성과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정책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대표성, 측정 가능성, 신뢰성) 및 적극성, 목표달성도 평가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 ▶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달성도 ▶ 핵심 민생과제 정책목표 달성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도 총 67개 과(팀) 중 67개 과(팀)의 6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5개(7.2%), 우수 7개(10.1%), 다소 우수 10개(14.5%), 보통 23개(33.3%), 다소 미흡 9개(13.0%), 미흡 11개(15.9%), 부진 4개(5.8%) 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9개 관리과제의 20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4.7%로,

- 19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1.7	99.4	94.7
총성과지표 개수	206	213	209
총성과관리 과제수	71	72	69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목표치 재검토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등 12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재산·자동차보험료 축소, 주택부채공제 대상 확대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3차례 발표 및 추진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4인 가구) 인상에 이어,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가구)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수급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임신 희망 남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규, '24.4월~) 통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난임 예방
 - 유기적·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추진
 - 재난의료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관리 강화
 - 기금 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및 중기자산배분·기금운용계획 마련('24.5)
 -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시행)을 통한 아동의 생명권·발달권 보호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55만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사회 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심 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및 국민 편의기능 고도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활용 서비스 개발지원

(3) 개선 · 보완 사항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등 15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 성과지표의 개편이 있었으나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는 부족함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을 위해 당사자인 장애아 부모나 가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추진을 위해 병원과의 협의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해나갈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의견수렴 노력은 돋보이나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미흡하며, 과제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I -1-①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우수
I -1-② [민생]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보통
I -1-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부진
I -1-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통
I -1-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I -1-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보통
I -2-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매우우수
I -2-②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다소 우수
I -2-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보통
I -2-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다소 미흡
I -2-⑤ [민생]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다소 우수
I -2-⑥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보통
I -3-①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보통
I -3-②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보통
I -3-③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매우우수
I -3-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우수
I -3-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부진
I -3-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미흡
I -4-①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다소 우수
I -4-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미흡
I -4-③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보통
I -4-④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다소 미흡
I -5-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다소 우수
I -5-②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우수
I -5-③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다소 우수
I -6-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미흡
I -6-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미흡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Ⅱ-1-①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소 우수
Ⅱ-1-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매우우수
Ⅱ-1-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미흡
Ⅱ-1-④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	다소 미흡
Ⅱ-2-① [민생]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다소 우수
Ⅱ-2-②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통
Ⅱ-2-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보통
Ⅱ-2-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미흡
Ⅱ-3-① [민생]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 연금 운영	보통
Ⅱ-3-②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우수
Ⅱ-3-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다소 미흡
Ⅱ-4-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보통
Ⅱ-4-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미흡
Ⅱ-4-③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보통
Ⅱ-4-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매우우수
Ⅱ-4-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부진
Ⅱ-5-①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다소 우수
Ⅱ-5-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다소 미흡
Ⅱ-5-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보통
Ⅲ-1-① [민생]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다소 미흡
Ⅲ-1-②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다소 미흡
Ⅲ-1-③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다소 우수
Ⅲ-1-④ 임신·출산 건강지원	매우우수
Ⅲ-2-①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	우수
Ⅲ-2-②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보통
Ⅲ-2-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보통
Ⅲ-3-① 취약 노인 돌봄 강화	우수
Ⅲ-3-②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	보통
Ⅲ-3-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다소 우수
Ⅲ-3-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보통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Ⅲ-3-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미흡
Ⅲ-4-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미흡
Ⅲ-4-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내실화	보통
Ⅲ-4-③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미흡
Ⅲ-4-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부진
Ⅳ-1-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다소 미흡
Ⅳ-1-②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구축	보통
Ⅳ-1-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통
Ⅳ-1-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미흡
Ⅳ-2-① [민생]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우수
Ⅳ-2-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다소 미흡
Ⅳ-2-③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우수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료개혁)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체계) 유기적·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평가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추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정적 운영 및 모형 보완·발전
- (전문병원)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 및 추진계획 마련 추진
- (의료광고)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용역(‘24.4.15.~12.31.)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 완료
- (태아 성별고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태아 성별고지 금지 규정 폐지
- (의료관계 서식) 보건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의 전자우편 이용을 촉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관련 현황 분석 내용이 보강될 필요
- (의견수렴의 적절성) 일부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의견수렴에 보다 추가적인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 관련 현황 분석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폭넓게 수행하였으나 일부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의견수렴에 보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전문병원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만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적절한 영역에서 잘 진행
8. 성과지표 달성도	-주요한 사업에 대한 개편 혹은 향후 추진을 지표로 제시하여 우수하게 달성 -사업 성과와 관련된 객관적 핵심지표 마련에 고민이 더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보험평가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통합적 평가체계를 마련 요청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대정원 확대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1.),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24.2.6.)

○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

-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우수한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의대생 단계부터 양질의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발표('24.9.10.)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지원

- 의료현장의 성희롱, 폭언 등 인권침해 상담 및 예방을 위해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운영

- 직무능력 평가 강화(평가 정확성, 문항 다양화 등) 및 응시자 편의 제고를 위해 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도입 시험 지속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심도깊은 고려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 환경 분석은 일부 제시되었으나 정책 배경이 되는 통계/사례보다 현황이나 정책 자체가 제시됨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사단체, 전공의.학생들과 소통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다만, 레지던트 비수도권 배정은 정원보다 실근무중인 인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의료인력정책은 숫자로서의 성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음.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심도깊은 고려가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보건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인 행정처분 제도개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 및 효율화
- (의료기사 인력관리) 의료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24.11.)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절차 개선>

- (선진입 제도) 선진입 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환자 동의서 구득 의무화 및 퇴출 기전 마련
- (선진입 관리)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청·접수, 과정관리(사용량, 환자상태, 이상반응) 등 근거창출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미준수된 일정이 많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상황이 어려움으로 계획된 추진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이해가 되지만, 일정관리에 아쉬운 점이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환경, 효과, 관련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정책 배경을 분석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 중 해외 사례는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상황이 어려움으로 계획된 추진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이해가 되지만, 일정관리에 아쉬운 점이 있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의료기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과 의료기사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구체적 성과가 나오면 좋겠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규칙이나 고시 개정으로만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어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면 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내실화
 -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질병군 중증 분류 검토 및 연구, 지표 모니터링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검토
-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평가 등 정비
 - 제2차('23~'27) 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운영 등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등 지속 환류
-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 의료기관 위기대응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보다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현황 분석을 추가할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 환경 분석은 일부 제시되었으나 정책 배경이 되는 통계/사례보다 현황이나 정책 자체가 제시됨. 보다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한 현황 분석을 추가할 필요
2. 의견수렴의 적절성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의 핵심목표이며 고난이도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가능한 대면으로 위원회를 연1회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볼 필요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연차계획 수립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 내용이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중 환자안전제고를 위한 제도정비와 의료기관 안전관리는 실적의 합으로 되어 있어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약품 공급내역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24년 이후 7차례)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와 관련기관들의 현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논의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교육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 기반 강화
 -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24.10.19.시행)
- 불법 약국 조사, 면허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
 -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 위탁기관(건보공단) 및 범위 지정(약사법 시행령 개정, '24.7.12.시행)
-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사유 등 표준화된 지침 마련(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24.7.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 홍보성과 내용이 우수함 - 마약류 관련 기관 및 대민 홍보강화 필요성 고민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약무정책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우수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공공심야 약국 이용자 수는 적정 기준이 없어 지표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공공심야 약국 1개소당 이용자수 등 지표의 검토가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23.4월~) 충실 이행 및 간호법 제정
 -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배치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주요 과제 지속 이행
 -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4.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간호 서비스 질 제고
- 역량있는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 간호대학에 대해 실습 장비·시설 지원을 확대('23년 7개소→'24년 14개소)하여 술기 및 실습교육의 질 개선 추진
- 요양병원 간병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 비상진료체계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보건의료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황분석,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 내용이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상종구조전환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영향 등 상황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간호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으면 더 좋겠음
9. 정책목표 달성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 간호정책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의료법 및 타 의료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재산·자동차보험료 축소, 주택부채공제 대상 확대 등
-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
 -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보험료 부담 완화
- 低보상·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수가(환산지수) 조정·개선
-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한 관리 강화
- 건강보험 개혁의 이행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강화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지속하며 3단계 시범사업 지역 공모(2월), 선정(4월) 및 시행(7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주요 정책의 대비책은 충실히 마련되어 제시되었으나 관련 환경/통계 분석이 추가되면 좋겠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주요 정책에 대한 관련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전년도 평가 결과도 비교적 잘 반영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 중량감 있는 추진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 점이 우수함 - 건보종합계획 연차계획 수립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 내용이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 내용이 우수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이 적극적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진과제의 시행 여부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임의적으로 비쳐질 수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인 형평성은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는 주로 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후자에 대한 정책적 평가도 해 주시기 바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 (고난도·고위험) 저평가된 수술 및 시술 행위 보상 강화
 - (소아·분만) 수요 감소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적시치료 위한 보상방안 마련
-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 (공공정책수가 신설) 기존 상대가치 제도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정책적 보상방안 신설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료체계 강화
- 건강보험 기준 및 기타 제도 개선
 -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포괄수가 및 실포괄수가 개선
 -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정책목표 달성도) 보험급여 확대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무엇(정책목표)이 달라졌는 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전략, 성과, 과제 목표 및 시의성과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제시. 다양한 방편으로 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어려운 과제인데 개별 접근은 적절히 하고 있음. 다만, 지원 확대 및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상반된 가치의 목표 달성을 위한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일정대로 급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우수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성과 내용이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어려운 여건에서 의미있는 다양한 성과를 냄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주로 활동량에 대한 것이어서 성과지표로는 한계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보험급여 확대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무엇(정책목표)이 달라졌는 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약제 접근성 개선)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약제 등재기간 단축
- (필수약 안정 공급)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
-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적 관리) 면역세포치료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약가 지불 방안 및 투약 이후 성과 평가 등 신약 사후관리 강화
- (민관협의체 운영) 약가제도 개선 논의 등 유관기관 소통 강화
- (급여적정성 재평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약제 재평가 실시하여 급여 유지 여부, 급여기준 등 조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다양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 고민 필요
- (정책목표 달성도) 보험급여 확대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무엇(정책목표)이 달라졌는 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접근성을 개선하는만큼 사후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데 약가, 사용량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외 실사용 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 및 급여 의사결정 등 다양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 고민 필요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약제 접근성 개선과 적정관리 추진은 서로 다른 목표이므로 이를 한 지표로 종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약제 접근성 개선율과 약제 적정관리 추진율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의 효과 예를 들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면 더 좋겠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지조사 및 자율점검 등을 통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
-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요양급여 사후관리 고도화
- 무허가 아킬레스건 수입·유통 조직은행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추진
-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추진
-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등 국민 중심의 평가 강화
- 핵심지표 및 진료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 정비 등 평가 수행체계 효율화
- 성과연동 보상체계 개선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성과보상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서비스 등)의 효과를 평가하면 좋겠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전략, 성과, 과제 목표 및 시의성과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제시
2. 의견수렴의 적절성	- 작년 지적된 개선사항을 올해 적극 반영한 점이 우수함 - 환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평가(적정성 평가) 성과에 대한 고민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면 좋겠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계획된 추진 일정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서비스 등)의 효과를 평가하면 좋겠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 달성도에 제시한 적정성 평가 지표가 보험평가과의 성과지표로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함. 검토해 주시기 바람
9. 정책목표 달성도	보건의료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통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필수의료 강화방안 수립 및 과제 이행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9.22)」의 이행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상강화
-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보완과제 발굴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달빛어린이병원 확충(94개소), 추석 연휴 중증·응급 수술 추가 가산 등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개선
-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안정적·집중적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 체계 마련 추진
-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 보완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공·사 의료보험 협력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드맵 마련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드맵 마련이 필요해보임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비급여/실손보험의 실질적 개선방안 제시가 시급히 필요해보이는데 성과 목표를 적절히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중량감 있는 추진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 점이 우수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를 필수의료 전반, 정책 대상 필수의료, 총괄과 업무 중심의 필수의료 군으로 나누어서 성과를 접근하면 좋겠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구성이 적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공사보험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음. 공사보험협의체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성과가 나오면 좋겠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발표(2.1)
 -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19.) 후속조치로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발표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
 - (지역의료분석) 필수의료분야(응급, 심뇌, 분만, 소아 등)에 대한 지역별 의료 수요·공급 현황 등 의료취약도 분석 지역의료 지도 마련
 - (인력)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
 - (인프라)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 (일차의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적정 만성질환 관리,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 선별급여 관리체계 정상화
 - 높은 현장 수용성 제고와 효율적 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평가주기 도래로 인한 평가 항목 급증('23. 2항목 → '24. 49항목) 예상, 선제적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으로 적시 의결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위원회 일정 외 추가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의료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 중에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음. 조정이 필요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상, 전달체계에 추가하여 수련 및 관리방안이 같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정책과, 보험평가과 등 부처내 다른 과와의 협력이 필요해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적합성 평가 관련 급여 의사결정시 달성하고자 한 목표를 개별 항목이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서 활동에 따른 실적인 계획 및 과제 수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지역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좋겠음
9. 정책목표 달성도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 같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완결적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
 - 전주기적 심뇌혈관질환 정책 발굴 및 중앙-권역-지역센터 협력체계 확립 등의 정책 지원을 수행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24.1.1, 서울대병원)·운영('24.1.~)
- 중증·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삶 개선
 -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암검진 고도화 및 암 진료 지역격차 해소
 - 암검진 고도화
 - 지역완결형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육성('24~)
 - 국가암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현안 대응
 - 감염병 위기 단계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간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의 신속성 및 효과성 확보('24.12.)
-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약자복지 실현
- 호스피스·완화의료 접근성 강화 및 암생존자 관련 인프라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의 우수성을 외부에 공유하여 우수성을 알리고 인정받는 노력이 더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기관 및 부처 등과의 협업이 이루어진 것은 드러나지만, 그 노력의 결과 원활한 정책추진에 기여했다는 결과도 제시할 필요 있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의 우수성을 외부에 공유하여 우수성을 알리고 인정받는 노력이 더 필요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의 설정과 달성도가 우수하나, 시행계획 수립 등과 같은 성과지표는 좀더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성과지표가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전반적인 과제의 목표와 내용은 훌륭한데 비해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등과 같은 소극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아쉬움.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책임의료기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해 필수 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지역 균형적 인프라 구축
-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역량 강화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경영혁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공공 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 ('24년 신규, 510억원)
- 지역 의료인력 확충 추진
 - (의료인력 파견 등) 대학병원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하는 의료인력을 증원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
- 국립대병원 육성 추진
 - (진료역량 강화 지원) 국립대병원(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최중증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술실 확충, 중환자실 현대화 등 투자 계획 마련
- 모자의료체계 강화 및 소아의료공백 해소
 - (모자의료 인프라 확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 신생아 지역센터(50개소) 운영 및 지원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관계단체, 이해관계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노력을 광범위하게 매우 많은 횟수로 시행하였음. 의견수렴의 노력이 매우 뛰어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전공의 집단행동 등과 같은 의료환경 위기상황에 공공의료를 통한 대응을 잘 수행하였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대표지표가 되기엔 적절하지 않음. 의료기관 확충률이나 혁신방안 마련 등 보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함. 정책 목표를 대표할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국가적인 의료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매우 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계 집단행동(2.20~)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대책 마련 및 추진
 - (응급의료대책 마련)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3차례 발표 및 추진(8월)
-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진료역량 강화, 지역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응급실 이용 환경 개선 등
 - (최종치료 역량 강화) 중증응급진료 공백 방지 및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 주요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실시(6월)
- (응급의료 인프라 관리·확충) 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기관평가를 통한 질 관리 등
 -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갖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미달성된 지표 존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미준수된 부분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및 비상경영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추진일정을 준수한것으로 평가함.
4. 정책소통 충실성	응급의료서비스는 국민들의 인지 및 체감도가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고 그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났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응급의료기관의 외상환자치료역할분담을 위해 의료질 평가에 중증 외상환자치료 정규지표를 신설하기위해 심평원과 협의한 부분 훌륭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이 우수하며, 성과지표의 달성도도 우수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난의료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 (정책기반) (이전)대비·대응 중심 → (향후)기획-대비-대응-환류 전주기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양질의 중증환자 이송 기반 마련
 - (이송기준) 병원 기준과 같은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Pre-KTAS) 제도화
- 응급처치의 전문성·적시성 강화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양성제도 정비로 현장 처치 전문성 강화
 -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및 관리 강화로 응급처치 인프라 확충
-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의 진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비상 시 입원 진료량 및 응급의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일일·주간 단위 모니터링 실시(2월~)
 - 비상진료·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전 등 주요 정책 근거 제공(3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DMAT 보험도입은 매우 필요한 과제로 잘 이행되었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재난의료는 관련 기관 및 부처와 협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평가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 달성과 더불어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훌륭히 달성함. 과제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이 우수하며, 성과지표의 달성도도 우수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명윤리 정책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체계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기반 강화
- 유전자검사 및 생식세포 관련 제도 개선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도 운영 확대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 안전한 정자 기증 환경 마련
- 연구 목적의 인체연구자원 제공·관리 체계 마련
 - 인체유래 연구자원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환경 마련
-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인프라 확충
 -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국민 참여 확대
 - 거점등록기관 시범 지정·운영(3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모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개편이 있었으나 정책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는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개편이 있었으나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는 부족함 성과지표가 생명윤리정책 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엔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전체 정책을 포괄하는 지표가 포함되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관리

- (기본계획)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년)을 지속 시행하고, 시행평가 및 과제개발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 (수급안정) 범부처·전문가 협력 도출, 혈장관리 강화, 수가인상, 헌혈문화 조성 등 혈액 수급안정을 위한 국가 역할 강화
- (혈액안전) 수급·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

○ 효율적인 장기등 기증·이식 관리체계 구축

- (기본계획) 중장기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을 위한 제1차 종합계획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24년 별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의학적 기증 활성화) 뇌사(추정)자 발굴 및 기증자 범위 확대, 기증자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기증 장기 확보 제고에 총력
- (기증문화 활성화) 장기기증 대국민 인식제고 위한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의료진 및 일반인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제대혈 관리) 중증질환 치료 및 신약 연구 등을 위한 제대혈의 적정량 확보와 관리 등 국가 관리체계 지속 운영, 기증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대혈은행 허가·관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달성도) 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대표할 성과 지표에 대한 지속적 고민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대표할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 고민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연환경 조성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홍보(국민건강증진법 개정, 8.17. 시행)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환경 조성
 - 제5기 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를 개정·고시*(12.23. 시행)하여, 흡연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금연 필요성 상기
- 생애주기 국가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 (생애주기 검진 강화)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진 강화
 - (통합적 검진체계 구축)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통합적 건강검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절주환경 조성으로 음주율 감소
- 비만예방 및 관리를 통한 비만율 감소
 -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매체 개발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로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의견수렴 적절성) 전년도 지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환류 노력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전년도 지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환류 노력 강화 필요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환경 구축 및 지역보건의료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전년 추진성과를 환류하고 '24년 범부처 실행계획 수립(6.21.)
 - (건강도시) 건강도시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해 건강도시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4.17.) 및 컨설팅 등 지자체 지원 강화
-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강화
 - (보건소 역할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기획·수행·관리의 핵심 주체인 보건소가 체계적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 강화
- 소생활권 기반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7개소 확충('24년 신규 3개소),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적당 국비 지원 단가 상향(2 → 2.5백만원, 25%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수립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활동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수립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활동의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정책수립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 활동의 강화 필요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영역 구성을 효율적으로 개편한것은 기여가 큼. 그러나 전체적으로 협업한 결과 정책추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기술할 필요있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 목표를 대표하는 성과지표가 적절하며, 달성 또한 우수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 (개선사업 운영) 본사업 전환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업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사업 운영('23.12월~'24.9월)
- (본사업 전환)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본사업모형(안) 마련 후 본사업 방안 건정심 심의·의결('24.5월) → 본사업 전환('24.9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 (체계적 내실화 준비) 별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주요 성과 확인 및 개선과제 도출·적용, 건정심(5.30.)을 통한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연장(~'27.6)
- (주요성과) (예방형)대조군과 비교하여 비만도, 수축기·이완기 혈압, 공복혈당 개선, (관리형)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축기 혈압 개선, 진료비 절감 확인
- (대상확대 및 편의증대) 관리형을 중심으로 참여지역(109개 지자체 →전국), 참여 방법(팩스 신청추가), 포인트 사용방안 등 개편·확대 적용(9.3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의견수렴 적절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전년도 지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환류 노력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전년도 지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환류 노력 강화 필요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정책 홍보결과 실제 목적을 달성한 실질적 성과가 뛰어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협업한 결과 정책추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도 기술해야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구강정책의 활성화 및 근거기반 구강정책 기반 마련
 - (기본계획) 관계 부처(부서) 합동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년)의 '23년 실행계획 평가결과를 '24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4월)
-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구강 관리
 - (아동)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7월~)
 - (장애인) 기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내실화^①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규 확충(1개소)^② 추진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장애인 환자 수 증가
 - (전국민)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습관 및 실천 향상 유도*를 위한 국가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운영 및 구강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 치의학 분야 전담기관 설립 추진 및 미래 발전 R&D 사업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구강건강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의 유기적 연결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구강건강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의 유기적 연결성의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으며,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취약계층과 전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에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구강정책 또한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확장되고 보완될 필요있음. 구강건강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의 유기적 연결성의 강화 필요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 마련
- 입원제도 개선 추진
- 정신건강 기초연구 지원 강화
-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급성기 집중치료 강화
- 정신의료기관 등의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 등 수련제도 내실화 추진
-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 개편/개선 노력 필요
- (의견수렴의 적절성) 전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 개편/개선 노력 필요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전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강화 필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등 주요 정신건강정책 입안 시 의료인 중심의 인사 구성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활동의 결과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제시가 되어야 함. 홍보활동의 영향이나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관리 강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시) 정신질환 악화 방지, 자살 예방 등 위해 우울·불안한 심리상태를 초기부터 케어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체계 내 정신건강검사를 청년층에 대해 확대 실시

○ 마약류 등 중독관리 인프라 강화

- 4대 중독(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지원센터 운영 및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운영, 다부처 협력 대응체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증상 관리·회복 지원

○ 재난 심리지원 및 트라우마 지원체계 정립

- 재난 상황에서의 심리지원 및 이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장기적인 정신건강관리체계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의 충실성) 홍보 효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학회 간담회, 시도 간담회 등 개최 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과 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학회/협회포함 필요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 효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그동안 정신질환자 중심의 국가 정신건강정책에서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예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훌륭한 정책임. 단, 모든 정신건강서비스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체계와 위탁구조, 전문인력의 고용 안전성과 안전한 업무환경,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해야하며 이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함.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생명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상담번호 개편)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을 '109'로 통합·개편(1.1.) 및 상담인력 정원 확대(80→100명(4월~))
 - (자살예방 SNS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SNS 상담 서비스 “마들렌”^{*} 개통(9월~)
- 자살위험요인 관리
 - (인식개선) 자살예방 실천메세지(‘자살생각 하나요? 마음구조 109’) 개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3월~)
-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체계 강화
 - (고위험군 지원)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계속(‘23.1.~) 및 청년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소득 조건 폐지, 7월~)
- 지자체 주도의 자살예방 추진기반 마련
 - (형사사법정보 분석) 경찰청 변사자 정보를 활용한 통계 분석, 지역 보고서 배포(매년 12월)를 통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수립·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사업에서 응급실 이후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주도할 다양한 기관이 확보되어야하고 이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사례관리하여 자살 고 위험군을 팔로우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자살시도자가 이후 사회의 어떤 정신건강기관에서 적절한 상담 및 지속적 서비스를 받느냐이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의 유관기관들을 제시하기 바람.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정책 디자인 필요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객관적 수치 중심의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한대로 잘 진행되었음. 단,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실제 현장의 교육참여도와 많은 의무교육으로 인한 피로도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응대하는 24시간 근무 상담사의 전문성과 태도에 대한 슈퍼비전과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짐.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일선 현장에선 전문가의 전문성과 적절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의약 건강돌봄

- (지원체계 구축)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 실무 지원단 등 재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5월, 11월) 및 지원단(컨설턴트) 운영 관리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사업내용)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높은 요구*를 감안하여 첩약의 건강보험 편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중(‘20.11~)
- 대상질환, 급여기준, 수가 개선 및 참여 의료기관 확대 2단계 시범사업 시행(4.29~)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 (사업내용)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후행 진료 및 협의진료의 급여 적용 근거 창출 및 수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16.7~)
- 사업모형 개선 및 추가 임상연구 필요에 따라 4단계 시행 중(‘22.4~’24.12)

○ 탕전실 제도 개선

-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한약의 품질·안전성 향상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개별 사업에 부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개별 사업에 부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개별 사업에 부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임. 적절한 지표 개발 및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어렵겠지만, 의학과 한의학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부처내 협력/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한의학 건강돌봄사업 미추진 지역 컨설팅 건수보다는 한의학의 건강돌봄사업 참여율로 하는 것이 성과지표로 더 적절한 것 같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지역 현장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의학 과학화·표준화) 한의학 R&D를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 및 한의학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 근거 중심의 한의학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 (한의학산업 기반구축) 한의학산업의 영세성 등 구조적 한계를 전주기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화 기반 구축
 - 한약 공공인프라 운영 및 한의학 소재은행 물질분양을 통해 한의학 산업 기반 구축
- (공급체계 개선) 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약재 공급체계 개선
 - 시설 관리를 통한 시설이용률 향상
- (한의학 세계화) 한의학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강화
 - 한의의료기관 개설 및 한의학제품 수출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소통 충실성) 개발한 CPG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CPG 이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충실성) 개발한 CPG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CPG 이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개발한 CPG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CPG 이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전체 보건의료 R&D 중 한의약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한의약 R&D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떨까 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한의약 R&D를 활성화하여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 좋겠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복지정책 방향 수립 및 총괄
 - '2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통한 두터운 약자보호 방향 제시(3.21.)
- 복지정책 환경 변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 정책환경 변화 및 주요 복지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세미나” 운영(총 8회)
-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이슈 파악 및 중장기 정책대안 논의
 - 국제사회보장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제시(총 8회)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제도 개선*('24.1월 시행)하여 비수급 빈곤층 보호, 차상위자격의 중앙부처 연계사업 등 혜택 홍보
-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제고
 -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법('24.1.2.공포, 7.3.시행) 및 시행령 개정('24.7.2.공포, 7.3.시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약자복지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며, 부서에서 지향하는 약자복지에 대한 정의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약자복지 주요정책에서 위기가구발굴과 고독사 위험군 관리가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약자복지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며, 복지정책과에서 지향하는 약자복지에 대한 정의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봄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주요 복지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 운영 과정에서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 혹은 추후 사회복지 정책 반영방안에 대한 장기적 계획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이후 지속적 사례관리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봄.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관계부처, 부처 내부에서의 협의 및 조정과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하는 노력을 하였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타부처 부서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본 부서의 업무성과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8. 성과지표 달성도	복지소외계획 발굴 건수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으나 발굴 이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9. 정책목표 달성도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계급여 급여 수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4인가구) 인상
이어,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가구)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24.7)

○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각종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대 최다 지원

○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기준 등 완화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 강화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애주기별 근로소득 추가공제 통한 탈
수급 촉진

○ 청년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자기돌봄청년 소득공제액 확대) 자기돌봄청년에 대한 지원금
(자기돌봄비 분기별 50만원)을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24.1)

○ 긴급복지지원 확대

- (생계지원금 인상) '24년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에
연동하여 13.16%(4인가구) 인상('24.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기준중위소득 관련 논의 이외에 다른 연구는 정책화되지 않은 것 같음
2. 의견수렴의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은 향후 좀더 상세히 기술해 주셨으면 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여러 부처와의 협업은 잘 진행된 것 같으나, 시민단체 등 수급자 지원단체 등과의 협업도 있었으면 함. 기초연금 관련하여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소상공자영업자 및 장기실업자 등 긴급생계지원 욕구가 있는 집단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포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신청자 대비 긴급복지선정자 수로 산출되는 '긴급복지지원수급율'을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면 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내실화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4~'26)'에 따라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대상자 확대·인프라 고도화 등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지속 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 (창업촉진) 성장 가능성 높은 자활기업*에 인센티브 30백만원 (총 10건, 271백만원) 지원 및 창업지원 교육 규모 확대('23년 80회/2,800명 → ('24년) 150회/4,150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청년지원 강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지속 완화, 가입자 중심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확대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제도개선) 의학적 평가 생략 영구고착 질환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수급자의 반복 평가 부담 완화(대상자 : 약 1,10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대처와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협업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대처와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협업 부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저소득층의 근로와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난이도가 높은 정책들임.
2. 의견수렴의 적절성	자활사업 이해관계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활정책 포럼 등은 충실하게 진행되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추진일정 미준수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은 적극적으로 대응, 반면 여건대처와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협업은 부족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이 성과로 잘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자활참여자의 자활역량낮은 속성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선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4~’26)에 따라 중증장애인 적용제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편** 추진(1월)
 -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가구에 대해 기준완화(소득 1억, 재산 9억 기준 적용)
 - ** 기본재산의 금지기준을 개편(3금지→4금지)하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 (수가·본인부담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 완화 추진
- (본인부담체계 개편) 17년간 동결된 본인부담의 정액→정률 개편안을 마련, 의료급여심의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7월)
-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사업지역을 73개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기입원 수급자의 퇴원 지원체계 구축(7월)
- (사례관리 다변화) 과다이용 사례관리에 더하여, 과소투약 중인 만성질환자, 건강검진 미수검자 관리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를 포괄하지 못함
- (정책목표) 의료이용 접근성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성과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과도한 의료이용 횟수 절감 등도 성과로 측정할 필요
- (정책목표) 필수적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 보호방안을 명확하게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가 본인부담 개선, 의료개혁 의제 등 정책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편임. 기존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꾸준히 진행하였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해 왔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와 재가 의료급여 만족도 조사들이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진행되어 연구 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라고 여겨짐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수가/본인부담 개선 관련 과제로 정신의학적 집중 관리료 보상방안의 경우,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유지/가속화하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재가의료급여제도와 같이 재가급여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
8. 성과지표 달성도	부양의무자 개선으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 수는 내년부터는 상이할 것으로 여겨짐. 과도한 의료이용 횟수 절감 등도 성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필수적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 보호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복지위기 알림 앱 시행)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 및 전국 시행('24.6~)
 - * 본인과 이웃 누구나 복지 위기 상황 발견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대상자 확인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 *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대상 선정(9.5.),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 '국민드림 프로젝트' 우수사례 선정(11.13)
 - ※ 전국 시행 후 약 4.6만명 회원 가입, 약 4천건 도움요청 ('24.10.31. 기준)
- (소재 확인 정보 제공) 통신사 보유 휴대전화 연락처 제공('23.12~),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 기재 의무화*('24.7)
 - * 다가구 주택 동·호수를 몰라 긴급하게 위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방지 효과 기대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개발·배포('24.6월), 행복이음 반영('24.8월)
- 복지위기가구 발굴,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상담 지원 등 수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및 복지서비스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고독사 관련하여 청년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인 반면, 다른 연령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설명은 부족
- (객관적 우수성) 위기가구 소재를 파악하고, 최일선 지원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대한 정책의 난이도가 높은 편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고 여겨지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2. 의견수렴 적절성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대상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 특히, 적절한 대상이 발굴되도록 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해야 할 듯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고독사 관련하여 청년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인 반면, 다른 연령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설명은 부족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은 타 부처와 협의 및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여겨짐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위기가구 소재를 파악하고, 최일선 지원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과의 주요업무중 하나인 전달체계와 관련된 준비나 향후 방향 등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좋겠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복지사업 표준화)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상이한 사업별 기준 조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등 통일적인 제도운영 기반 조성
- (전산관리번호 운영)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행려환자, 주민등록 불명자, 출생미신고 아동 등)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대상(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증가에 따른 관련 보호체계 마련
-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정보 확대 등 법 개정 수요에 맞춰 사회보장급여법 하위법령 개정
- (효율적 관리 지원)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안내된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복지멤버십 홍보 등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업노력) 부처내부 협업활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작성 필요. 현재는 일상업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
- (성과지표) 신규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 공적서비스 제공기관 중 여전히 사회서비스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있는 기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전체 공적서비스 기관 중 사회서비스시스템 이용을 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을 신규지표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난이도는 높은 편임.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지자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 노력이 좀더 가시화되어 적시될 필요가 있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다양한 홍보수단이란 표현이 모호함. 구체적 홍보수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부처내부 협업활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작성 필요. 현재는 일상 업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신규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 더불어 공적서비스 제공기관 중 여전히 사회서비스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있는 기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전체 공적서비스 기관 중 사회서비스시스템 이용을 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을 신규지표로 관리했으면 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 (정기발굴) 2개월마다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 후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연 6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AI 활용 초기상담 지원
 - 시스템 구축* 후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시나리오 기반 AI” 초기상담 실시, 지자체는 초기상담 결과로 필요 대상 심층 상담·복지지원
- * “시나리오 기반 AI활용 초기상담 전화(1600-2129) 시스템 구축(’23.7.~’24.5., 26억원)
-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선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 복지로 웹/앱접근성 인증 획득, 간편인증 확대, UI/UX 개선 등 디지털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AI 초기 상담의 경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즉각적으로 의견 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객관적 우수성)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하였는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정보 활용정도는 낮다고 여겨짐. 이러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성과지표) 타부서에의 지원과 협력 등을 성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언론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AI 초기 상담의 경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즉각적으로 의견 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부서의 업무특성상 타부서와의연계, 협력, 지원이 중요할 수 있음.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하였는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정보 활용정도는 낮다고 여겨짐. 이러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봄
8. 성과지표 달성도	타부서에의 지원과 협력 등을 성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해보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 (제도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 운영 중인 259개 복지사업 개정 사항 반영, 지자체 업무 효율화 등 시스템 개편
 - (보호출산제 도입 지원) 시스템 구축 설계 및 1, 2차 개통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성공적 안착
- 사회취약 계층 발굴 지원 및 권리 구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수급탈락자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출·안내하여 수급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24.1월)
- 적정 급여 관리 및 조사 업무 효율화
 - (확인조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정기조사 연 2회, 월별 조사 연 6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소통) 국민이 체감하는 소통 성과 미흡
- (협업노력) 부서의 일상적 업무로 협업노력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목표설정의 적극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홍보 성과 제시 필요
- (협업노력) 일상업무와 더불어 개선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조정 등의 내용 설명 필요
- (성과지표)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복지제도 신규나 개정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국민이 직접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구체적 서술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과의 일상적 업무로 보임. 일상업무와 더불어 개선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조정 등의 내용이 설명되었으면 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업무행정효율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예를 들면 실무자의 자체평가나 만족도 조사 등)
8. 성과지표 달성도	2024년 목표에서 발굴연계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음.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실무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실무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회 지원('24.1~4) : 연금특위 논의 참여 및 공론화 지원
 - (연금특위) 21대 국회 연금특위('22.7~'24.5) 및 민간자문위 운영('22.11~'23.11),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안 논의 지원
 - (공론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공론화 실시('24.1~4월), 재정 전망 데이터·해외사례·제도 현황 등 논의 기초자료 제공
- 개혁안 발표('24.9) : 21년 만에 정부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
 - (의견수렴) 세대별 간담회('23.12~'24.8, 8회), 노인가구 방문 인터뷰('24.7~8, 총 12회), 설문조사(3천명 대상, '24.8) 등 국민 의견수렴 실시
-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자 확대('22)3.9→('24.8)16.9만명),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확대(24.1~)
- (대국민홍보) ①청년층 불신 해소, ②연금개혁 필요성·시급성, ③제도 이해도 제고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홍보·소통 적극 활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업노력) 연금개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은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감소 등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감소 등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정부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을 하였으나 추후 복지부의 정책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연금개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지만,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은 낮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수와 급여액은 자연스러운 증가가 아닌가 생각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운용 전문성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 공고화
- 전문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상근전문위원 연임규정* 마련 및 단체에서 상근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토록 규정 변경(‘24.2)
 - * 현행 3년, 연임 별도 규정 없음 → 연임 한차례 규정 신설, 총 6년 가능
- 기금 운용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기자산배분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마련(‘24.5)
- 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체계 및 책임투자 내실화
-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거점 확대 및 투자여건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해외 연기금 대비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의 기금운용 성과를 고민하여 제시 필요
- (성과지표) 향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한다면 이를 성과지표로 명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연금운영의 수익성을 달성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해외 연기금 대비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자료만 보면 연금개혁과 무관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일만큼 연금 개혁에 대한 노력이 드러나있지 않음.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에서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이처럼, 공단 기금운용실무 내용보다 '정책적 차원'에서의 기금운용 성과를 고민하여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향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한다면 이를 성과지표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정기준 상향) '24.1월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5.4% 상향 조정하여 수급기준 현실화('23년 202만원 → '24년 213만원)
- (기준연금액 인상) '14년 도입 이후 기초연금 지급액 지속 인상*
중으로, '24년 노인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14) 20만원 → ('18) 25만원 → ('21) 30만원 → ('23) 32.3만원 → ('24) 33.5만원
- (빈곤 완화) 노인빈곤율, 노인인구 빈곤갭 감소에 기여
* (노인빈곤율) '19년 41.4% → '20년 38.9% → '21년 37.6% → '22년 38.1%
** (노인인구 빈곤갭) '18년 37.4% → '19년 35.3% → '20년 32.0% → '21년 33.7%
- (기초연금 인상 및 구조개혁 논의 지원)
 -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 우선 인상('26) 후 지원대상 확대('27)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의견수렴) 자체평가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노력 부족
- (객관적 우수성)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외의 제도의 객관적 우수성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충실성) 기초연금 예산의 매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필요
 - 지방비 금액도 매년 증가함으로써 재정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 필요
- (객관적 우수성)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정책적 노력이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한 자동적 증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기초연금 예산의 매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지방비 금액도 매년 증가함으로써 재정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의견수렴 적절성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에서 정부의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적으면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설명이 다소 미흡함(예, 검토추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기초연금성과를 무엇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임.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정책적 노력이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한 자동적 증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짐)
8. 성과지표 달성도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임. 다른 지표를 통해 기초연금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수립>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확정·발표('24.3.)
 - '23.3.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23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 부처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2024년 시행 계획안 마련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 '23년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4~'25) 추진
 - 지역 공모·선정(4~5월), 참여자 모집(6월), 시범사업 실시(7~12월), 모니터링 분석 평가·보완(연구용역 계약체결 '24.5~'25.3)을 통해,
 - '25년 시범사업 준비 순으로 진행,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 계약('24.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위탁 운영(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총 241명에게 지역사회 주거 전환 및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24.11월 현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장애인자립지원주택 관련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성과지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핵심과제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개인예산제,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장애인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시도 간담회,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30개 지자체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중. 장애인자립지원주택 287호 확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방안.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대안모색해야 할 듯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특히 거주공간 확보와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확보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량평가는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정성평가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핵심과제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실시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접수 및 학대의심사례조사, 피해장애인 지원** 실시, 현황보고서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록
 - * 중앙 1개소, 경기·충북은 2개소, 그 외 시도는 1개소씩 설치·운영
 - ** '23년 기준,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5,497건, 학대의심사례 2,969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장애인 지원(상담, 사법지원, 복지지원, 거주지원 등) 30,340회
-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기반 마련 및 교육홍보 활동
 -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전부처 및 유관단체, 지역주민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최초 실시('24.5.27., 435명 참여)
 - 부처별 중복교육 부담완화 등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통합콘텐츠 제작
 -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사회적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와 협업체작(∼'24.12.20.)
- 장애인등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 * 장애인 이용이 많은 제1, 2종 근생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충실성) 구체적 연구나 분석에 대한 내용 미제시
- (홍보 성과) 국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미제공
- (성과지표 적절성) 구체적인 성과지표 미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충실성) 구체적 연구를 통한 정책분석 필요
- (홍보 성과)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 인식도 제고 필요
- (성과지표 적절성) BF인증 기관 확대건수 등 보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치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 및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터나 소관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의견수렴 적절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장애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경우 현장모니터링이 적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장애인학대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였음. 더불어 일반 대중들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좋지만 신고 의무자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발생 기관이나 행정처분 기관의 경우 거주 장애인이 이주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여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발생함. 행정소송기간동안 기관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학대당사자는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장애인의 거주공간이 부족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장애인학대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였음. 더불어 일반 대중들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좋지만 신고의무자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최대 42만원)
 - 매월 중증장애인의 70%인 35.2만 명에게 장애인연금 최대 42만원 지급, 경증장애인 중 41.9만 명에게 장애수당 최대 6만원 지급('24.9월 기준)
 - * (기초급여) ('23) 323,180원→('24) 334,810원(+11,630원, 물가상승률 3.6%)
 - (부가급여) ('23) 8만원→('24) 9만원(+1만원,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 (법령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기초급여액 고시 개정('24.1월)
-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일자리 2천개 확대* 및 신규 직무 3종** 개발·보급('24년 총 45종)
 - * ('22년) 27,546명 → ('23년) 29,546명(+2,000개) → ('24년) 31,546명(+2,000개)
 - ** 정신장애특화동료지원 활동, 농-농 케어, 물리치료 보조 3종
- '25년에도 2종의 신규직무 개발('24.11), 2천개 일자리 확대 반영
-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비율 상향(1%→1.1%) 및 미달성 기관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24.8~)
 -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24.2.6), 같은 법 시행령('24.7.9.), 중증 장애인생산물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24.7.17.)
- 장애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4종 확대('23년 38종 → 24년 42종) 및 교부단가 4종 인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장애인 일자리 신청 및 참여 제외에 대한 대안 모색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장애인빈곤율 지속 관리 필요
- (정책목표 달성도) FGI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달성도 평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7만원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유형이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평균보다는 장애인당사자의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례별로 분석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의견수렴 적절성	장애인관련 정책 실행 중 이해관계자나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은 비교적 충실하게 수렴하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짐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장애인 일자리 신청 및 참여 제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마을기업,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미달성 기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목표 성과 달성과 관련, 장애인 빈곤율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온전히 정책노력을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현재는 주로 만족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다양한 질적 수준(FGI, 심층면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수급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상확대 및 특별지원 등 추진
 -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신규 지원 시행('24.9월~)을 위한 법령 개정('24.2월 개정, '24.9월 시행) 및 사업 지침 배포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구축)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 등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서비스 추진('24.6.~)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경우 일시적(1회 최대 7일) 돌봄서비스 제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활동지원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족에 대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공적돌봄 이용률, 1일 이용시간 등도 추적, 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65세 이후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추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 이용시간과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4. 정책소통 충실성	시각장애인 재난 발생 시 조력자 연결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활동지원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족에 대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봄. 2년간 한시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지원자격도 엄격한 제한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들을 확대시키거나 서비스 제공방식도 시간제 이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가족 중 자녀의 활동지원은 가능하신지 명확하게 기술을 해 주었으면 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와 관련, 공적돌봄 이용률, 1일 이용시간 등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 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통해 의료·복지 통합건강보건관리 제공
 - 멘토보건소(서울 관악구 등 16개소)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관리 공유 및 확산 등 사업 기반 마련(2회)
- (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개시기관 확대 ※ ('23년) 8개소 → ('24년) 10개소
 - 사업 지속을 위한 운영비(150백만원) 지원, 지정기관 관련 컨설팅 제공(3회)
- (건강주치의) 지원대상 및 방문서비스 횟수 등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4차 시범사업 시행('24.2.28~)
 - * (대상자) 중증→경증까지 확대(중증 24회, 경증 4회)
 - (방문서비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18회→24회)
 - (주장애 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24.10월 기준) (건강 주치의 797명, 장애인 6,666명 / (치과 주치의 449명, 장애인 1,888명)
-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확대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건립 ※ 7개소 운영 중, 2개소 건립 추진 중(충남, 전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유관 병원 등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장애인주치의 이용자 증가폭에 비해 주치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구축을 위한 병원과의 협의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장애인주치의 확보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을 위해 당사자인 장애아 부모나 가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권역별 재활병원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구축 지연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추진을 위해 병원과의 협의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장애인주치의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4년 기준 주치의 797명, 장애인 6,696명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현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장애인주치의 확보방안과 장애인이 사업을 적절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8. 성과지표 달성도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되어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과 언어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나 다른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부처·지역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 연계 및 통합 강화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지표에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가
 - * 15개 부처 111개(다부처 협력과제 11개) 과제(제32차 위원회, 4.29~30)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추진
 - 사회보장제도 조정 및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
 - * 개최실적 : ('23) 33회 → ('24) 42회(본위 3, 실무위 3, 전문위 36회)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 재정 투자 방향 제시를 위해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24.11.)
 - 재정추계의 정합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재정전문위 외에 재정추계 위원회 별도 구성·운영(4~11월), 이중의 검증 구조 마련
- 사회보장정책 평가·수립 및 OECD 국가 간 국제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OECD 제출
 - * '20, '21년 확정치 및 '22~'24년 예측치 산출(안) 마련 ('24.10.), OECD 제출 ('24.1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충실성)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과 수행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작업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사업결과의 성과를 보다 직접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사회보장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등 난이도가 높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2. 의견수렴 적절성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수행 기능에 대해 대국민 홍보작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5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하였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공공사회복지지출 산출을 활용한 분석자료에서 목표치 초과달성하였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사업결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 강화에 두고 국가 및 지자체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도록 정합성 제고 및 협업 촉진 지원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중심으로 사전협의를 진행
‘16년 이후 사전협의 요청이 연간 1천 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
 - * 협의요청 : ('21) 993건 → ('22) 939건 → ('23) 1,728건 → ('24.10.) 1,425건
- (사전협의 기본방향* 명시) ‘국가-지자체간 사회보장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간 복지격차 최소화’ 협의 방향 제시
 - * 제3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23.10.4.) 후 보도자료 배포('23.10.12.) 및 중앙부처·지자체에 공문 송부('23.10.16)
 - 지자체 실무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존 협의 사례 기준 등을 구체화해 알기 쉽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안내 및 제공
 - * 현금급여 사업을 서비스사업으로 변경, 급여 수준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재조정, 지원대상별 소득수준을 고려 본인부담금 차등 설정(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협의요청사업의 완료 수준이 낮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협의 접수 건수 설정 근거 미제시 및 전년 실적치 대비 낮은 목표치 설정 등 목표치 적극성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협의요청 사업에 대한 완료 건수 상향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설정 근거 구체화 및 도전적인 성과 목표치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협의요청사업의 완료정도는 낮은 수준임.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협의 완료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8. 성과지표 달성도	추진실적에서 협의요청시 소요일수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성과지표인 협의 접수 건수의 재설계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또한 만족도 목표가 전년대비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적극성이 낮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

- (평가계획) '24년 평가과제 수요조사('23.10.24.~31.) 결과와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성과평가 계획등 평가전문위 보고
- (과제선정)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과제 후보사업들에 대한 제도별 추진상황, 전문가 자문 및 평가환경 점검 등 종합검토를 통해 최종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전문위 보고(총 2회)

②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 '23년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 97개 과제 중 우수 4개(4.1%), 정상추진 79개(81.4%), 개선필요 14개(14.4%)

③ 범부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결합

- (표본 구축) 통계청 인구·가구 DB(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소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인구·가구 표본을 추출·구축('24.1.17)
- (자료 구축) 표본을 기초로 30개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로 800여개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정보 수집 및 연계·구축('24.5~12월)
* 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홍보 성과) 홍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
- (성과지표)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건을 높이기 위해 정보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정책목표 달성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부처 의견 조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건을 높이기 위해 정보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전문연구자들에게도 오픈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상당한 노력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 활용건수가 현재는 20건에 불과함
9. 정책목표 달성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방향) 저출산 3대 핵심분야 지원(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에 역량을 집중 지원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6.18.)
 - * 저출생 대책 및 이혼등이 대책 마련을 위해 기혼부부, 미혼청년, 미숙아 부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패밀리스토밍, '23.12~'24.1/ '24.10)
- (거버넌스 개편)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가칭}인구대응기획부 및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범국가적 총력대응
- (법령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및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24.3월)
 - *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 규정, 저고위위원회에 법제처장 포함 등
- (인식개선 홍보) 방송사 협업,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위한 홍보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도가 낮으며, 목표도 구체화 되지 못함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고령화 대응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비전 제시 및 목표 구체화 필요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고령화 대응 성과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타매트를 설정하였으며, 우선 순위설정에도 공감함. 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가능한 채택할 필요가 있어보임. 예를 들어, 대중적 접근도 있겠으나, 확산해 나가는 동심원, 기업, 대학, 직능단체 등 조직 대상의 연계성, 특정 대상에 대한 표적 모집 등 방법 등 활용 검토.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대상자의 관리, 그리고 이후 성과 평가의 수월성과도 연결된 부분으로 초기 설정 중요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과 오피니언 리더 운영 등을 통한 홍보 노력이 우수함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고령화 대응 성과 미제시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과제이기에 성과 지표도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지표로 구성 필요
8.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 제고 필요하며, 향후 정책비전 및 목표 구체화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프라 확충) '24.9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전국 누적 1,169개소 (신규 121개소) 확충, 3만여명의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4,247개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14.6만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운영 내실화) 돌봄 필수 운영시간 확대, 개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강화 및 운영 기준 변경
- (서비스 질 제고) 시설 평가 시 아동학대 사례 반영 및 수시평가 실시 등 평가체계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개편을 통한 센터별 서비스 질 관리 유도
- (공공성 강화) 개인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시설로 전환, 회계투명성 및 운영효율성 제고 유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유사한 돌봄 제도인 학교돌봄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설정의 적극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이용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돌봄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마을돌봄체계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과 성과체계가 필요
- (성과지표) 공공성 강화 관련 비율 지표(개인사업자운영비율 감소 등)나 학교돌봄사각지대 보충 등 대체 지표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이용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돌봄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마을돌봄체계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과 성과체계가 필요.
8. 성과지표 달성도	이미 90점 이상의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평가됨. 공공성강화 관련 비율지표(개인사업자 운영비율감소 등) 나 학교돌봄의 사각지대 보충(연장운영비율이나 방과후 혼자방치되는 시간 감소 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시범사업) 중앙정부 최초 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들만을 전담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실시, 2년간('24.8~'25년)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 대상 시범사업 추진
- (지역 내 위기청년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및 자립시까지 지속 관리
 - * 인천, 울산, 전북(각 시서사서원), 충북(충북기업진흥원)
- (가족돌봄청년) 1:1 밀착 사례관리 지원 (가족포함 2,400명)
 - (상시 전담발굴체계 구축) 지역 내 학교, 병원 등 가족돌봄청년과 접점이 많은 유관기관과 원스톱 연락체계 구축 및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사회공헌 민간단체, 기업 등과도 협력체계 강화
- (고립은둔청년) 전담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서비스 제공 (960명)
 -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청년소통) 복지부 2030 자문단(20명) 선발·운영 및 청년인턴(155명) 관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정책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노력이 우수함
8. 성과지표 달성도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노력 인정됨. 정책초기여서 성과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성과지표 측정방법 자의적 목표 대비 수급인원의 자의성 개선 필요. 초기사업이며, 예산의 제한 등이 있다고 생각되나, 이후 목표치는 현실적을 고려하여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 바람직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임신사전건강관리) 임신 희망 남녀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규, '24.4월~) 통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난임 예방
- (난임시술지원 대폭 확대) 규제는 철폐, 지원의 양과 질은 대폭 확대하여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
- (난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중앙 1, 권역 9개소)*를 통해 상담(유선·대면·방문·온라인) 및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 * '24년 상담센터 2개소(서울서남, 경북서부) 추가 설치
 - ** 상담현황 : '23.12월 6,537명 (39,003건) → '24.10월 6,278명 (37,345건)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도입·확대('24년 9개 지자체 추가, 총 68개)
 - * 사회정책 분야 최초 무작위대조군 실험연구를 통한 성과입증 中
- (출생통보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시행('24.7.19.~)
 -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 출생아의 정보를 취합·관리, 미신고 아동 발생 경우 부모에 신고 의무 고지 및 필요시 직권 등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난임우울증상담과 같이 이미 만족율이 95%이상을 달성한 지표의 경우 차년도에 지속적 상승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일정기준 이상 달성여부로 정책달성도로 포함시키고, 상담효과 즉, 대상자의 우울점수의 실제적인 변화 등으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각 과제별로 정책환경·효과 분석, 관련 통계·사례 등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우수하게 추진함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 과제별 문제점을 해결한 실적이 우수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출생통보제를 포함하여 고난이도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인정되어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수상등을 받은 점 등은 본 부서의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입증 근거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8. 성과지표 달성도	상담만족도, 미숙아 퇴원후생존율, 이용권지급율 등 핵심사업의 질적, 양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 난임우울증상담과 같이 이미 만족율이 95%이상을 달성한 지표의 경우 차년도에 지속적 상승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일정기준 이상 달성여부로 정책달성도로 포함시키고, 상담효과 즉, 대상자의 우울 점수의 실제적인 변화 등으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에 관련 실적과 수치 등의 성과달성 노력이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위기 임신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시행)을 통한 아동의 생명권·발달권 보호
 -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등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25.7월 시행 예정)
 - (아동보호 사각지대 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개정
 - 제102회 어린이날,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24.5~8월, 900여명) 아동 정책포럼 및 아동권리포럼* 등을 통한 아동 권리 증진 및 인식 제고 추진
- * ❶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의 의견 수렴(11.4.), ❷ '23년 패널 조사결과 분석 공유 및 확산(12.6.) ❸ '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결과 공유·확산(12.6.)
- 차질 없이 아동수당 지급이행 통한 아동 양육비용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부모급여 지급인상을 통한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도입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성과지표 도입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아동보호공적책임강화 및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 난이도가 매우 높고, 시급성, 적절성 면에서도 높이 평가됨
2. 의견수렴 적절성	보호출산제 및 공적입양체계 개편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고난이도 정책과제를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부처 내·외부 협의·조정을 통한 성과 창출 노력이 우수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부혁신왕중왕전 은상 등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과학적 체계적인 근거중심의 아동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패널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책형성, 추진,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현재의 자체평가 보고서상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23년이나 24년과 같이 제도 도입기(시행전)의 성과는 난이도 높은 제도 도입여부와 시행방안수립이 가장 중요한 성과일 수 있지만 시행후에는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모니터링 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지속적 모니터링 가능한 양적 성과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유기아동수 감소, 위기임신출산상담후 원가정양육 및 보호출산 결정비율, 가정형보호 증가율, 국내입양비율 확대와 해외입양비율 축소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호대상아동 양육] 아동인권중심의 가정형 보호체계 강화
 - (아동보호체계 전환) 아동보호체계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을 위해
 ①초기보호체계 구축 ②가정형 보호강화 ③시설기능전환, 로드맵 마련 및 진행
 - (가정형 보호강화) 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강화* ▲면접교섭 관리** ▲자격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 [보호대상아동 자립] 보호아동·청년 자립지원 강화
 - (경제적 지원) 18세 이전 조기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실시('24.2), 보호종료후 5년간 자립수당 인상*, 자립정착금 1천만원 이상 권고
 * 지급액 인상 : 월 30만원('19.4) → 35만원('22.8) → 40만원('23.1월) → 50만원('24.1)
- [취약계층아동 지원] 취약계층가정의 아동통합서비스로 양육여건 개선
 - (서비스 제공)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 57,501명 사례관리 지원 중('23년말 기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업 노력도) 관계부처·당청 간 협의를 통한 성과 기술의 보완이 요구됨
- (성과지표) 가정위탁만족도나 가정형보호비율, 전문가정위탁수, 특수욕구아동(장애, 영유아, 입양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위탁율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서 중요시 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니터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정책·사업 준비 및 집행 과정에서 유관기관뿐 아니라 관계부처·당청 간 협의를 통한 성과 기술의 보완이 요구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노력을 통한 각 과제별 정책 추진 성과가 우수함
8. 성과지표 달성도	가정위탁만족도나 가정형보호비율,전문가정위탁수, 특수육구아동(장애, 영유아, 입양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위탁율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중요시 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에 관련 목표 달성 실적과 수치 등의 성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고 활성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 교육 시행 및 홍보
- (조기발견)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안전 확인(가정방문) 및 서비스 지원(e아동행복지원사업)

* 예방접종 미접종, 장기결석,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 44종 정보 활용

** 95,572명 가정방문, 25,567명 복지서비스 연계, 128명 아동학대의심 신고 등 (11.7 기준, 전년도 12월 대비 각각 1.7%, 28.9%, 60% 증가)

- (대응인력 전문화) 대응인력 전문성 향상,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해 기관별·대상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 17개 과정, 39회 운영, 4,087명 수료

- (전담의료기관) 시·도 단위의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확대 지정 ('22. 8개소 → '24. 16개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 정립

- (심리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고난도·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거점 심리지원팀에서 직접 심리서비스 제공

* 전국 17개 시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3명의 심리지원팀 인력 배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위기상황발생과 관련한 대책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대응결과로 마련된 조사지침이 차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유사사건의 재발을 적극 예방 필요
-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에 관련 실적과 수치 등의 성과 달성 노력이 우수하나, 향후 정책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기반한 기술이 요구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각 과제별로 정책환경·효과 분석, 관련 통계·사례 등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기술이 필요함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부모대상 교육 50만회 조회수 고무적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예방하지 못한 사망사건(부산18개월아동사망사건)은 유감스럽지만 위기상황발생과 관련한 대책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대응결과로 마련된 조사지침이 차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유사사건의 재발을 적극 예방할 필요가 있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사대상아동학대신고, 판단건수 대폭감소가 성과의 객관적우수성을 보여줄만한 근거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에 관련 실적과 수치 등의 성과달성 노력이 우수하나, 향후 정책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기반한 기술이 요구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예방적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55만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사회 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안전·안부, 생활교육, 사회참여 지원, 가사, 외출 동행 등

- (응급상황 대응) 화재 등 응급상황 신속 감지 및 119 등 연계

* ('24년 9월) 화재대응 6,354건, 응급호출 20,814건, 활동미감지 227,240건

- 기상특보(폭염, 한파, 폭설 등)에 대응 요령 알림 제공(기상청 연계)

- (스마트 돌봄) 돌봄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위해 발전된 ICT 기기를 돌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진행

- (노인학대 조기발견 등 신고체계 활성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 입법 노력* 노인학대 신고어플(나비새김) 활용성 제고** 등 노인학대 조기발견 등 신고체계 활성화

*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문정복, 이수진 의원 등 노인복지법 개정발의 중)

** 노인학대예방포스터 제작·배포(수시), 입원자 및 보호자대상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설치 안내('24.4.26 지자체 공문시행) 등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3.26 공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보다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 필요 및 성과지표 측정 시기와 평가시기 간 정합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돌봄서비스의 품질은 돌봄 종사자의 일자리, 근로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 자체로 성과라고 생각함. 이러한 점에서 돌봄필요 노인 대상의 일상생활지원과 함께, 수행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정, 활동지원 등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함께 병기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각 과제별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실적이 우수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각 과제별로 부처 내·외부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성과 창출이 우수함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각 과제별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정책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가 우수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족도 목표치를 23년보다 낮게 잡은 이유 설명 필요 성과지표의 측정시기를 자체평가 일정에 맞게 조정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로 확대*하여 103만개 제공(+14.7만개)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내실화 추진
 - * ('23) 88.3만 → ('24) 103만(+14.7만), 국정과제 45(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 (예산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25년 노인일자리 수를 110만개로 확대*하여 노인인구 10.4% 수준으로 제공
 - * ('24) 103만개 / 2조 264억원 → ('25년 정부안) 109.8만개(+6.8만개) / 2조 1,847억원(+1,583억원)
-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자체 협조하에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실시하여 전국에서 14,831명의 폐지수집 노인 발굴*
 - * 노인일자리 참여 4,787명, 보건복지서비스 신규 연계 947명, 1,112건 등
- (장사정책 제도개선)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 강화
- (장례문화 인식개선) 장사시설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환을 위한 ▲온라인 추모서비스 고도화, ▲각종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홍보 등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성과지표 중 노인자원봉사자수, 프로그램확대 경로당수 등의 지표적설성 재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사회활동 및 여가프로그램'은 일자리와 자원봉사, 여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임.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문화 조성'은 법, 지침 정비,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수급관리, 실태조사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및 지원체계 확충과 건전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조성'으로 확대 제언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장례문화 관련 홍보활동의 실적 외에 이를 통해 나타난 효과나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중 노인자원봉사자수, 프로그램확대 경로당수 등의 지표 적설성 재검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에 관련 실적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목표와 기대 효과가 우수함 노인일자리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의 차원을 넘어, 건강개선, 의료비 절감, 고용 만족도 등 정량적인 성과와 사회 전체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가서비스 이용량 확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확대
- (서비스 다양화)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신규 재가서비스 추진
- (통합판정체계) 노인의 의료-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24.4.~)
- * 요양병원·장기요양 서비스·지역돌봄 서비스
-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13개 지역(1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약 3,000명 대상 시범사업 추진 중
- (재정 안정성) 법정 수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 예산 확보('24년 2.2조→'25년 2.3조원, '21~'25년 20% 지속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성과지표에서 '수급자(1·2등급) 월 한도액 인상' 부분은 향후,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1, 2등급의 재가 거주 비율이나 재가 1, 2등급의 월한도액 사용률 등 지속 가능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있으나,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등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함. 각각의 과제가 가지는 난이도도 있으나, 서비스 강화나 연계라는 과제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며, 과제의 난이도를 더욱 높이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내외부 환경과 변화 추이 등 정책 분석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바람직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실적도 있으나, 향후 장기요양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별도의 과제 수행(앞에 대비책 마련 부분에 기술한)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함. 관련 활동과 성과도 의견수렴의 충실성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정책효과 실적이 구체적이고 우수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여 각 과제별 문제점 해결 노력과 실적이 우수함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중장기계획과 맞물린 지표 및 목표치 설정으로 연속성을 보다 가질 수 있도록 검토. 성과지표에서 '수급자(1·2등급) 월 한도액 인상' 부분은 향후,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1, 2등급의 재가 거주 비율이나 재가 1, 2등급의 월한도액 사용률 등 지속가능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연구용역 바탕 지정갱신 심사절차 지표 및 기준 포함한 표준매뉴얼 수립
- (재무회계) 예·결산 보고, 승인 이력 지자체 통보 및 승인을 부진사유 파악, 재무회계 규칙 운영 매뉴얼 교육 등 재무회계 내실화 추진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24.12월)
- (거주지 인근 요양시설 확충) 신노년층의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도심 등 거주지 인근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진입 제도 등 방안 연구 추진
 - *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24.11~12월,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 (역량강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24.4월~) 및 승급제** 운영(4~9월)
 -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 **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총 60개월(월120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후 월 150,000원 지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주요 사업 영역으로 시설과 인력 측면의 개선을 보다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검토 필요
- (정책목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및 보수, 승급교육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 강사인력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도 중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각 과제별로 정책환경·효과 분석, 관련 통계·사례 등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지정갱신제는 공급생태계 개선 등 공익적 목표달성에 목적이 있으나, 공급자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세부사업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들로 구성됨. 다만, 주요 사업 영역으로 시설과 인력 측면의 개선을 보다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검토 제안
9. 정책목표 달성도	향후 정책목표 달성과 기대효과 성취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및 보수, 승급교육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 강사인력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 치매 관리 중심축으로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 (운영 고도화) 1주기 치매안심센터 2차년도 운영평가 추진(~'24.8.)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우수기관 포상 실시(26개소, '24.9.)
 - 지역사회 내 치매예방·치료 서비스 향상 및 다양화
 - (조기 관리강화) ①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7.3.시행) 및 관리매뉴얼 개발 연구(5월~), ②초로기 치매환자 대상 지원사업 연구 진행(2월~)
 -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 (치매역학·실태조사)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 실시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 대상 치매 현황 및 돌봄 부담 등 조사 추진('23.3.~'24.11.)
- *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노인건강 관련 성과 제시 미흡
- (성과지표) 정책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부, 국회, 언론 등의 평가 관련 내용 제시와 함께 노인건강 관련 성과도 포함하여 제시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 치매와 노인건강 등 해당 사업을 포괄하면서, 대표성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 필요
 - 또한 지표의 산출 시점을 고려하여, 만족도 등 조사 시행 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치매정책과에서 노인건강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제 목표로 '노인건강관련 정책 개발 및 노인성질환 치료 지원 등을 통해 노인 건강 문제 대응'을 포함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임. 다만, 가능하다면 치매와 건강을 균형 있게 포함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318-9쪽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관련하여 정부, 국회, 언론 등의 평가 관련 내용 제시와 함께 노인건강 관련 성과도 포함하여 제시 필요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 치매와 노인건강 등 해당 사업을 포괄하면서, 대표성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 바람직함. 더하여 지표의 산출 시점을 고려하여, 만족도 등 조사 시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정책목표 달성도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부분도 주요한 성과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함. 개편 초기이기는 하나 향후 사례관리 자수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성과지표도 자체평가 일정에 맞게 성과측정 시기 조정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성과평가) 전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평가(77개 과제) 및 제도개선(7건 개선 완료) 실시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규모화·조직화 지원)
 -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가맹모델’ 구축(24개소) 및 공유화(‘23.5~)
 - (공급주체 다변화) 제공기관 간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질 좋은 공급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컨소시엄형 공급체계(10개소) 활성화 추진
-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제1호 투자펀드 결성(총 145억 원, ’23.9월)에 이어 제2호 투자펀드의 성공적인 결성 완료(총 70억 원, ’24.9월)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난이도·취약지 등 시장 실패 영역 보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정책기획에 비해 구체적 정책성과 미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정책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기획에 비해 구체적 정책성과 명확치 않음 과제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함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긴급돌봄) 주돌봄자 공백·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한시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규 추진('24.6월~)
- 비정형·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돌봄 안전망 구축
- (일상돌봄)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심리지원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확대
- (취약지 지원사업)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지원해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24.1월 공포, '25.1월 시행 예정) 및 법령 개정으로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제공자의 범위반사항 공표근거를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 디지털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확산노력과 사회 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종사자 디지털 교육 참여 실적을 반영한 노력이 적절하며, 내년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상황변화를 사회 복지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측정 시점을 자체평가 일정에 맞게 조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디지털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확산노력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종사자 디지털 교육 참여 실적을 반영한 노력이 적절하며, 내년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상황변화를 사회복지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과제별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연계 및 협조를 기반으로 성과가 우수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측정 시점을 자체평가 일정에 맞게 조정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외의 목표한 성과 달성도에서 스마트기술 활용 등을 포함하여 성과 달성 제시 범위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제시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추진
 - (법령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확대*로 법인 및 지자체의 행정력 절감('24.5월)
 - * 사회복지법인이 임대계약 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 갱신 뿐 아니라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갱신계약 시에도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로 인정
-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의 운영 적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관리감독) 정기 및 수시 감사를 통해 소관 법인의 운영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하고, 감사결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24년도 소관법인 위임감사 실시계획 보고('24.3.26.) 및 23개 법인감사 완료('24.12월)
-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안전점검) 안전점검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상·하반기) 실시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연중) 강화
 - *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 시설물, 가스, 전기, 소방안전, 재난대응대책, 감염병 관리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소통) 홍보성과에 대한 기술 부족
- (성과지표) 전향적 정책기획 및 성과 미흡
- (정책목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술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단순한 홍보실적뿐만 아니라 홍보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필요
- (성과지표 및 정책목표) 구체적인 실적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단순한 홍보실적뿐만 아니라 홍보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디지털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확산노력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종사자 디지털 교육 참여 실적을 반영한 노력이 적절하며, 내년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상황변화를 사회복지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전향적 정책기획 및 성과 미흡
9. 정책목표 달성도	향후 정책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기반한 기술이 요구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준수율 상향) 복지부 소관 국고지원시설^(9종*) 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333억원 추가 확보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0.9%p 제고^(추계치)
 - * 장애인거주, 정신요양,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물판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 ** 국고지원시설(9종) 인건비 예산 : ('24년) 8,719억원 → ('25년 정부안) 9,052억원 (+333억원, +3.8%)
 - *** 가이드라인 준수율 : ('23년) 94.1% → ('24년) 95.3% → ('25년 정부안 기준) 96.2%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도화 기반 조성
 - (인력수급)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불안 문제 대두에 따라 돌봄인력 수급 전망 등 관리체계 마련 위한 기초연구 추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총괄
 - (일자리 TF) 취업자수 둔화 등 '24년 고용상황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 일자리 정책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참여
 - * (일자리 TF) 기재부1차관-고용부차관 공동주재, 관계부처 참여, 월 1회('22.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분석 및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외부평가의 우수성에 대한 기술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과제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분석이나 대책 마련은 타 부서 보고서에 비해 미흡함
2. 의견수렴 적절성	의견수렴 노력은 돋보이나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미흡함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정책·사업 준비 및 집행 과정에서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한 성과 기술 보완 필요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과제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함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구성과 함께 지표 산출 관리를 통해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 성과지표는 가능한 투입 또는 실적 측면 보다는 산출, 결과 측면에서 설정 바람직
9. 정책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성과 미흡 정책목표 달성도에서 관련 실적 및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내용 정리 바람직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바이오 안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질서 재편 및 전략적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협력 및 바이오 안보 정책 강화
- (거버넌스) 범부처에 걸친 바이오헬스 산업규제 및 지원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구성·운영(’23.12~)
- (연구중심병원) 국내연구문화 저변 확대 및 해외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R&D과제 지원 확대
-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에 필요한 공백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다소 추상적인 정책목표 제시
- (정책소통) 홍보활동의 성과에 대한 기술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 제시 필요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정책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인지 검토 필요
- (정책소통) 홍보활동의 결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혁신생태계라는 정책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 또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하위정책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인지 고민이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활동의 결과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제시가 되어야 함. 홍보활동의 영향이나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건의료 R&D 정책 및 투자방향 총괄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24년도 시행계획 수립·발표(6월)
- 보건의료 R&D 투자 1조원 규모로 확대
 - 국가 R&D 혁신 방향에 맞추어 혁신·도전적 연구와 글로벌 R&D에 대한 집중적 투자 강화
-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전 R&D 추진
 - 넥스트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 의사과학자(MD-Ph.D) 배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부~석박사 양성과정 확립 및 안정적 연구생태계 구축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R&D 예산확보 등 전반적인 실적은 우수함. 종합계획 수립건수는 성과지표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정책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R&D 예산확보 등 전반적인 실적은 우수함. 종합계획 수립건수는 성과지표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정책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투자확대)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24, 총 3,06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집중 투자 집행 중
-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신약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해 혜택 부여('12년~)
- (R&D)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 美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보스턴 CIC 입주기업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전주기 컨설팅 지원 통한 글로벌 C&D 강화 지원('24년, 11억)
 - * 미 CIC 입주기업 지원 ('23년)20→ ('24년)30개사, 전주기 컨설팅 6개사 지원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및 해외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업상담·정보제공,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제약바이오 투자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책강화와 이를 반영하는 성과지표에 대해 고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제약바이오 투자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책강화와 이를 반영하는 성과지표에 대해 고민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료 해외진출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2차 종합계획('22~'26)의 3대 중점 전략 및 7대 주요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정책협의회)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 「의료 해외진출법률」('16.6월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5개 고시를 1개로 통합하여 민원 편의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23년 60.6만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4년 76만 명(추정) 달성 예정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 일본, 몽골, 우즈베크 등에 14개 프로젝트 지원, 해외 의료기관 개설, 운영컨설팅 등 해외진출 누적 239건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효과 분석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 및 국민보건측면에서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개편/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 및 국민보건측면에서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개편/개선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산) (상급)종합병원 중심 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및 국민 편의기능 고도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활용 서비스 개발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안전관리체계 기반의 보건의료정보 연계·활용 확대 및 디지털 헬스케어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 R&D 추진
- (진료정보교류 확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확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확산
- (2주기 전자의무기록 인증기준 마련) 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기준을 강화한 2주기 인증기준(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약물 알레르기 정보공유체계 구축)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체계 구축, 환자 진료 및 처방단계 등에서 의료진의 안전한 의사결정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가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되고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도 우수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 강화
 -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24.9월, 제2차관 주재) 및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위원회’ 개최(4회, 분기별)
- 고품질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활성화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4~'28년, 범부처 사업) 본격 착수
 - * 총 100만 명[1단계('24~'28) 77.2만 명] 규모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 등 수집·생산하는 빅데이터 구축(약 6,066억원 / 복지·과기·산업·질병청 공동 추진)
- 의료 AI·데이터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의료 인공지능 R&D 로드맵(2024~2028) 발표(9월),
 -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에 AI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관련 4대 전략 9개 과제 수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정책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미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데이터 활용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데이터 활용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확대 고민 필요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첨단재생의료 치료 접근성 확대 및 임상연구 활성화

- * 제1차 기본계획('21.1)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23.3) 內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과제에 따라 추진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대 및 역량 강화

- (재생의료기관 지정) 임상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을 갖춘 의료기관 대상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확대 통한 인프라 구축

* ('21) 34개 → ('22) 56개 → ('23) 85개 → ('24) 103개('24.11)

** SOP 작성가이드, 전국 권역별 설명회, 공용 IRB 위탁 등 통한 지정 활성화 지원

○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전주기 지원)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기술개발-중개연구-임상시험 지원 확대

○ 첨단재생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산업분류체계 표준화) '23년 기구축한 첨단재생의료 산업분류 체계(안) 기반 첨단재생의료 전·후방 산업 현황조사 실시('24.6~1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재생의료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 및 국민 보건측면에서의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피드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1.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재생의료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 및 국민보건측면에서의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피드백 필요
2.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3.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4. 정책소통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특이사항 없음
7.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특이사항 없음
8. 성과지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9. 정책목표 달성도	특이사항 없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성과지표 달성도)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규칙이나 고시 개정으로만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어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개발 추진(~'25. 상반기)
I-3-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개편이 있었으나 '정자기증자보호 시행계획 개정'이라는 지표는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는 부족함 * 성과지표가 '생명윤리정책'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엔 다소 아쉬움이 있음. 정자기증자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포함되어도 좋지만, 그 외의 전체 정책을 포괄하는 다른 지표도 포함되면 더 적절할것으로 보임	○ '생명윤리정책'을 대표하여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을 검토하겠음
I-3-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 (성과지표 달성도) 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대표할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 고민 필요	○ 안정적 혈액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로의 설정을 검토하겠음
I-4-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수립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 활동의 강화 필요 *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있음	○ 정책수립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겠음(연중)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세부영역 구성을 효율적으로 개편한것은 기여가 큼. 그러나 전체적으로 협업한 결과 정책추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기술할 필요	○ '25년 평가시 협업 실적과 더불어 협업으로 인한 정책기여도를 함께 기술하겠음(25.12월)
I-6-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개별 사업에 부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수혜자 등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음
	○ (정책소통 충실성) 의학과 한의학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의학과 한의학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모니터링 센터 선정·운영 등 온라인 소통 체계 구축 및 활성화하겠음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6-② 한의학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 (정책소통 충실성) 개발한 CPG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 CPG 내용 반영한 한의사 보수교육 추진 ○ 산·학·연·병 CPG 무료배포 이벤트 추진 ○ CPG 탑재된 NCKM 사이트 홍보 지속 ○ 한의사협회 및 한의대 찾아가는 홍보 추진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CPG 이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 필요	○ 임상한의사패널 토론회 및 학회 간담회 추진 ○ 대학교육현장에서 CPG 이용현황조사 ○ 한의의료기관 임상에서 CPG 활용현황모니터링
II-1-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대처와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협업 부족	○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하겠음
	○ (정책목표 달성도) 자활참여자의 자활 역량이 낮은 속성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선 필요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음
II-2-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일상업무와 더불어 개선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조정 등의 내용이 설명될 필요	○ 협의조정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기관 참여 실무 협의체 운영 강화
	○ (정책목표 달성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실무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실무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 핵심요원, SR (사용자요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측정 방안 설계 ('25년 下)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Ⅱ-4-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의 경우 현장모니터링이 적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반 대중들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좋지만 신고의무자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지킴이지원센터 운영 및 감시체계 정례화 - 인권침해 상황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강화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25.4월~)
Ⅱ-4-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의견수렴의 적절성)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을 위해 당사자인 장애아 부모나 가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관련기관 협업노력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추진을 위해 병원과의 협의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부모 등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 예정 ○ 운영 중인 7개 재활병원 대상 운영발전위원회 개최 (연1회) ○ 건립중인 2개소 대상 사업 모니터링(연중)
Ⅲ-3-⑤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정부, 국회, 언론 등의 평가 관련 내용 제시 및 노인건강 관련 성과도 포함하여 제시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 치매와 노인건강 등 해당 사업을 포괄하면서, 대표성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이 바람직함. 더하여 지표의 산출 시점을 고려하여, 만족도 등 조사 시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 사업 (실명예방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25.下) ○ '25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노인건강 관리 분야 지표를 추가하겠음(25下)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경우 '24년 신규지표인 점, 당해연도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하였으나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평가 시 잠정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4-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기획에 비해 구체적 정책성과 명확치 않음 * 과제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함	○ 향후 정책성과가 명확히 들어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겠음('25년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
Ⅲ-4-③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 (정책소통 충실성) 단순한 홍보실적뿐만 아니라 홍보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함	○ '25년 자체평가 추진실적에 홍보실적에 따른 가시적인 홍보성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정책목표 달성도) 향후 정책목표와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기반한 기술이 필요함	○ '25년 자체평가 추진실적 작성 시 구체적인 실적에 근거해 정책목표 달성도를 기술하겠음
Ⅲ-4-④ 사 회 복 지 종 사 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의견수렴의 적절성) 의견수렴 노력은 돈보이나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미흡함	○ 의견수렴 내용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과제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함	○ '25년도 성과결과 제출시 과제별 지표 내용 및 그 파급효과를 심층분석하여 기술하겠음
	○ (정책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성과 미흡함 - 정책목표 달성도에서 관련 실적 및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내용 정리 바람직함	○ 예산확보, 법률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 수단을 마련하겠음
Ⅳ-1-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 및 국민보건 측면에서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개편/개선 필요	○ (유치) 유치의료기관의 진료비부과 실태조사 등을 통한 경제효과 분석 보완 예정('25.下)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보건복지부는 **춤춤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 핵심기능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① 의료개혁 4대 과제
- ② 의료기반 강화

**더욱 춤춤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①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 ② 두터운 약자 보호
- ③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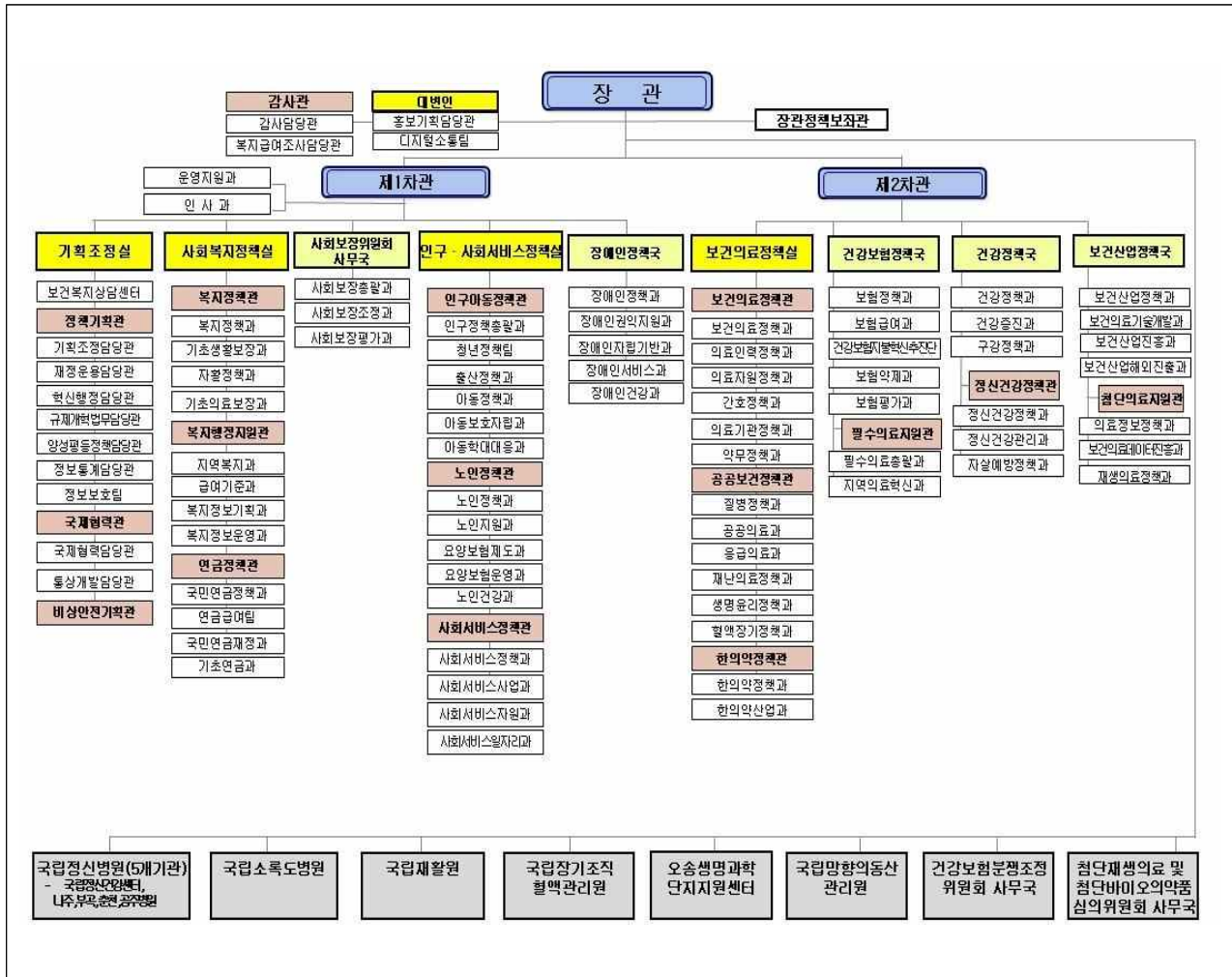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①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 ② 국민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① 출산·양육 부담 경감
- ② 연금개혁 지속 추진
- ③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 조직도('25.1월 기준)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빈곤·질병·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 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

비전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국가 건설
----	-----------------------------



전략목표	I.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II.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III.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IV.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	---	--	--	---

성과목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의학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I)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성과지표

국민건강검진 수검률

□ 성과지표 개요

〈 국민건강 검진수검률 〉

- 개념 : 건강검진을 통한 만성질환 및 주요 암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강화로 국민건강상태 개선 도모
- 조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대상 : 당해연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대상자
- 조사방법 : 건강검진통계연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DW 발체
- 측정산식 : (일반·암·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인원/ 일반·암·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100

□ '24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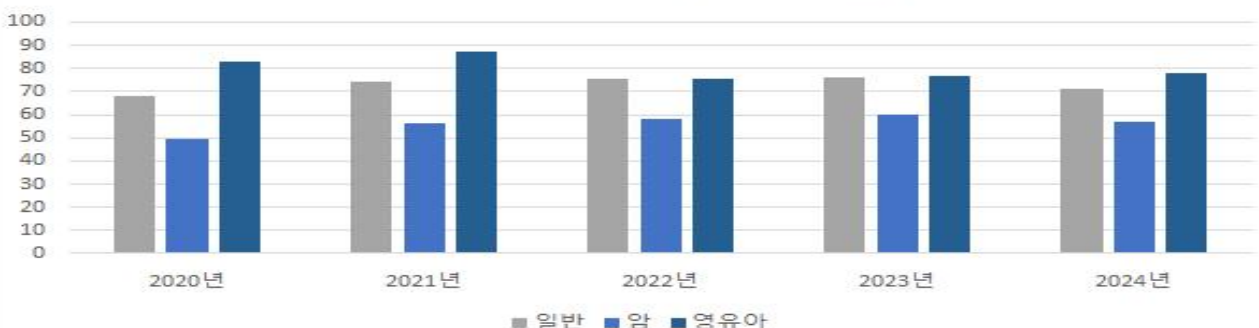
- (개요)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일반·암·영유아) 수검률은 평균 70.0%

(단위 : %, %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대비 2024년 수검률 차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66.8	72.6	69.8	69.8	70.8	4.0
일반	67.8	74.2	75.4	75.9	71.0	3.2
암	49.6	56.6	58.2	59.8	56.7	7.1
영유아	83.0	87.1	75.7	76.7	77.9	▽5.1

* 2024년도는 12.31일 청구기준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

국가건강검진 종별 수검 현황



□ 성과분석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를 통해 건강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내 정서·사회성 교육(건강교육·상담)을 확대(2회→4회, '24.1.1.시행) 하는 한편,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을 추진('25.1.1.시행) 함으로써 지역 병·의원 중심 소아의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건보공단 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하고,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실시 등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체제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 (복지부·교육부 국장, 공동단장) 여가부, 교육청, 질병청 및 학교장대표, 학부모대표, 관련 의료계 등 13인 구성('23.5.~)
- ** ('24.7.30.~'24.12.31.) 세종·강원 원주시 초1·중1·고1 학생 약 4.7만명
- 아울러 청년층 대상 우울증* 검사 주기 단축 및 조기정신증* 검사 신규 도입, C형간염 검사(56세) 신규 도입과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로 검진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 (청년층 20~34세) 우울증 검사 확대(10→2년), 조기정신증 검사 2년 주기 실시
- ** (기존) 54, 66세 여성 → (개선) 54, 60 66세 여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 실시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25.1. 시행)하고, 발급방법을 다양화(인터넷 발급 등)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QR코드 활용 장애인 수어동영상 안내, 점자안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5개국어) 안내문 제공 등 취약계층(장애인, 의료급여자, 다문화가정) 맞춤형 검진안내로 검진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 및 자가 건강관리 지원으로 질병 이환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 (대사증후군 관리)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 대상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12.31. 현재(단위: 명, %)

대상자 수	건강상담 (건)				LMS	건강문고	
	합계	1차	2차	3차		건강실천안내서	질환예방안내서
7,253,988	497,962	492,276	5,581	105	4,038,861	381,247	4,518

- (영유아 건강검진 사후관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대상, 발달지수 정밀검사 안내 및 정밀검사비(차수별 1회 실비 지원) 지원을 통해 조기진단·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2024.12.31. 현재(단위: 명, 건)

합계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상담제공	보건소 연계
28,443	28,443	27,118	20,746

□ 향후 추진계획

-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검진결과 등을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 만성신장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심뇌혈관, 우리아이AI건강지킴이

성과지표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성과지표 개요

<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 **개념** : 생활이 저하되는 상황에 놓인 개인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과 급여와 관련된 사회적 지출
- **조사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 9대 정책영역 중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가족, 기타 영역은 사회보장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산출 / 보건, ALMP, 가족 중 영유아교육(ECEC) 영역은 별도 기관에서 산출하여 원용
- **조사방법** : 중앙정부·지자체 결산자료 및 사회보험·공기업 지출 자료 활용하여 산출
 - * 급여지급과 관련된 관리, 조사, 평가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비용은 제외
- **측정산식** : 공공사회복지지출액(중앙정부·지자체, 사회보험, 공공기관) / 명목 GDP
- **조사연혁** : OECD 가입('96년) 이래, '98년부터 격년마다 통계 제출·공표

□ '24년 측정결과

- (확정치) '18년, '19년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각각 10.9% 및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하였습니다.
- (예측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되어 '20년 GDP의 14.4%, '21년 GDP의 14.9%, '22년 GDP의 14.8%로 '20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4%로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 격년으로 공표하는 통계로, 해당 수치는 OECD의 발표('25.1분기) 후 업데이트 예정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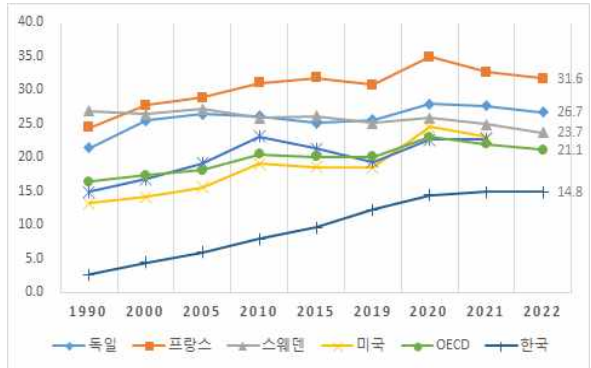
구 분	확정치		예측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 국	10.9	12.3	14.4	14.9	14.8
OECD 평균	19.7	20.1	23.0	22.0	21.1

* 출처: OECD Stat. Social expenditure('23.1월 기준)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및 주요국 비교



* '18년, '19년 확정치, '20년, '21년, '22년 예측치



* ('09~'19년 증가율) OECD평균 3.5%, 한국은 9.3% 약23배 수준

□ 성과분석

①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24.7.)
-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인상하여 '23년 5.47%(4인), '24년 6.09%(4인)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223	368	471	573	669	762
'25년	239	393	503	610	711	806
증가액	+16	+25	+31	+37	+41	+45
증가율	+7.34%	+6.79%	+6.59%	+6.42%	+6.16%	+5.86%

- 이를 통해 '25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은 '24년 대비 월 11.8만원 인상 (4인)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4인) ('24) 월 183만원 → ('25) 월 195.1만원(월 11.8만원+)
(1인) ('24) 월 71만원 → ('25) 월 76.5만원(+월 5.2만원+)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24.7)

- 먼저, 자동차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예외적으로 4.17%만을 환산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를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까지 완화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대상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생활 보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수급자 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이후 최대치인 267만명('24.12.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 (수급자 수 추이) ('19) 188만명 → ('21) 236만명 → ('23) 255만명 → ('24) 267만 명
-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수준 인상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지원금 단가를 월 3.9만원 인상하였고('24. 12월 고시 개정),
- 그간은 의료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생계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의료지원을 받은 후 동일 사유인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24.12.).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24.1.), 부양비 부과비율을 인하(30% 또는 15% → 10%, '25년 예산)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급지기준을 개편(3급지→4급지)하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를 인상*(25년 예산)하고,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 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가산('24.6~7)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폐쇄병동입원료(일반입원료 12% 가산), 격리보호료(건강보험 동일수가) 신설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3개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19%) 등 내실화를 통해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의 퇴원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 (확대) 동일 상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외래·약국 본인부담 개편안* 및 의료이용 관리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발표('24.7.)하였습니다.

* 정액 항목을 정률(외래 4~8%, 약국 2%)로 변경,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천→12천)

** 입원·외래·약국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에서 개별관리로 변경 등

②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시행하고 관계부처 협력 강화를 통해 발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 시행('24.6)하여, 위기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발굴체계에 상시 현장 발굴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 사업 시행 후 약 5.1만명 가입, 약 6천건 도움요청('24.12.31.기준)

- 신속·정확한 위기가구의 발굴을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 기재를 의무화('24.7)하였으며, 통신사가 보유한 휴대전화 연락처를 지자체에 제공('23.12~)하고 있습니다.
- 집배원이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를 배달하면서 파악한 위기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협약 지자체(시군구) : 8개 → 60개('23년) → 86개('24년)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두절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24.7~11월, 약 2만 4천명 대상)를 실시하였습니다.
- 복합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의 발굴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를 발표(관계부처 합동, '24.6.27) 하였습니다.
- * (추진실적) ▲서민금융센터,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등 대상 협업 교육 실시('24.8월~), ▲서민금융센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복지멤버십 가입시 금리인하 혜택(0.5%) 제공('24.10월~), ▲위기가구 발굴정보(금융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정보) 추가('24.11월) 등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에 따른 '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24.4월), 사회적 연결강화 위한 주요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24년 7월부터 전국 확대(39개 → 229개 시군구) 시행하였습니다.
- 고독사예방법 상 고독사 정의를 확대하였고('24.2), 고독사예방협의회 운영·구성,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24.3)
-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개발·배포('24.6)하였습니다.
- * 고독사 위험자 발굴조사 시 고독사 위험자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판단도구(식사, 음주, 타인과 소통 빈도 등 10개 문항, 총 13점)로, 결과값이 6점 이상인 경우 위험자로 판단
-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자원을 위한 행복이음 기능을 구축하였고('24.4),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상담·사례관리 지원, 통계 생성기반 기능을 탑재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완료('24.8)하였습니다.
- 전문적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조사·연구기관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를 지정('24.4월)하였고, 정책추진 초기 면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22년에 이어 '24년에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실시·발표('24.10월)하였습니다.
- * 「고독사예방법」 상 법정 조사 주기는 5년이나, 당분간 매년 시행 예정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 지원을 위해 고난도 위기사례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현장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https://www.hopep.or.kr>)을 통해 생애주기, 알콜·정신·심리, 사회적 고립, 법률, 금융상담 5개 분야 전문가가 상시 컨설팅 제공('24.5~)

** 사례공유 컨퍼런스 개최(4회, 358명), 통합사례관리사 전국대회 개최(350명), 민·관 협력 사례관리 경진대회 개최 등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20) 3,197→('21) 3,312→('22) 3,352→('23) 3,426→('24.11월) 3,460(설치율 97.4%)

**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제공 실적('24.11월) : 445만건('23.11월 대비 2.1% 증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 지원*, 사회보장특별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간 사회보장 불균형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체계적·효율적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계획, 시행결과, 평가 전 과정에 이르는 매뉴얼 개발·보급(24년 시행결과보고서 및 평가기준, 25년 시행계획)

**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복지역량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 자생력 강화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24년 8개 시군구, 12억(개소당 1.5억원))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등 청·장년층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도 안내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83종, 지자체(서울시) 6종 총 89종 급여 안내('24.1월) → 지자체 사업 45종 추가('24.12월)

- 신규 가입 이벤트 추진, 유관기관에 홍보물 제작·배포,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 송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자:927만 명('22년)→967만 명('23년)→1,022만 명('24.12월)

○ 복지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습니다.

-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복지 위기 의심 가구 95만 명을 선별하고,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하여 상담, 방문 조사를 통해 55만 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24.1~9. 기준)

* 기초생활보장 3.3만명, 차상위 0.6만명, 긴급복지 1.6만명 등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를 47종*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년 44종→'24년 47종) 노후긴급자금 대부(3월),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7월), 정책서민금융 신청반려자(11월)

○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 지자체 업무 효율화 등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서울형 금융재산 특례 적용 등 49건

○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공공요금 수혜 정보 연계** 등 다양한 복지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락서비스 발굴을 지원 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탈락자에 대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대상자 발굴 44,036명

**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감면 수혜 연계 109,501가구

○ 적정급여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 현행화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급여 13종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연 2회,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매월, 총 6회) 실시

** '24년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결과 재정절감액 1조 5,390억원 추계

③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지원법 시행('22.3)에 따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4~'28)」 수립·발표하였습니다.('23.12.12, 사회보장전략회의)

- '23.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였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체 계 도 >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고도화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등이 소통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5회)을,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타운홀미팅(1회)을 개최하였습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기술 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모태펀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제1호 결성(145원)에 이어, 연속성 있는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제2호 투자 펀드를 성공적으로 결성(70억원)하였습니다.
 - 총 215억 원의 펀드를 통해 현재 총 10개 기업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컨설팅, 기업-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3차년도로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비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는 총 23개소에 인증을 부여하였고, 작년 인증기관(23개소)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도입하여 인증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영세한 제공기관들이 대부분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주체 혁신’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과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공유화 사업에서는 장기요양분야, 집수리 분야에서 2개의 거점기관의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가맹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다변화 사업에서는 총 10개의 컨소시엄을 활성화하여 각 지역에 맞는 복합적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영세한 공급기관들이 모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민간의 자발적인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육성·지원하여 공공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기부식품등제공(푸드뱅크), 멘토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등

- 사회복지자원봉사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9.11~12), 멘토링사업 설명회(10.17) 등으로 민간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24.12월 말 기준) 활동 봉사자 661,729명, 자원봉사 관리센터(활동처) 13,840개소, 케어뱅크 활동봉사자 4,711명, 멘토링 활동 지원기관 318개소

- 현장방문*, 민·관 합동 워크숍(6.4), 사업장 실태점검 및 평가(4~12월) 등을 통해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1.24), 청주시푸드마켓(7.18)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연도별 모집실적 >

(단위: 백만원, '24년 12월말 기준)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잠정)
합계	160,901	178,316	202,803	219,849	236,548	211,849	240,047	247,592	255,763	253,430
식품	139,371	152,067	164,819	185,064	197,450	174,327	189,729	199,147	213,037	212,115
생활용품	21,530	26,249	37,984	34,785	39,098	37,522	50,318	48,445	42,726	41,315

- 업무 협약, 간담회*, 포럼·세미나, 기업 연계** 및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 등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와 관심 제고 등 지속적으로 민간의 사회공헌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공항공사 등(4.18.)

** 기업과 사회공헌 연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스 데이(9.23) 및 소셜업 공모전(10.18)

***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기여도가 높은 기업·기관을 발굴, 인정마크 부여('19. 121 → '20. 265 → '21. 350 → '22. 404 → '23. 531 → '24. 626(전년 대비 +95개소, +17.9% 증가))

-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심리지원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 시행 첫해인 ‘23년 대비 3배 이상 사업지역을 확대*해 전국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청년 이용자 모집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남양유업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 (’23) 예산 185억원, 51개 시·군·구, → (’24) 예산 335억원, 185개 시·군·구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등 돌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 한시적인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마련하여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복지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시·군·구에서 6개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도서 벽지, 산간 지역 등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취약지 지원사업’을 ‘23년 3개 시·도 7개 시군구에서 ‘24년도 10개 시·도 82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 267개소를 선정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장비, 운영비 및 인센티브 등을 거점 제공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을 개정(24.1.2 공포, ‘25.1.3)하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제공인력 범죄경력조회 절차 및 가산이자의 산정방식, 법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24.12.24 공포, 시행규칙 ‘25.1.2 공포).

- 사회서비스원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통합·해산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 필요(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공급 부족 분야 및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거점기관으로서 민간 제공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 강원 기린, 상남 다함께돌봄센터, 충남 부여노인종합복지관, 전북 장수 자활센터 등

** 인사, 노무, 회계, 재무, 홍보, 경영, 시설안전, 직무역량 강화 등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에 따라 돌봄인력 양성 및 자격 기준 체계화, 인력 수급 추계 관리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별로 분절된 돌봄인력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자 양성(교육) 및 자격 기준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현황 및 쟁점, 개선안을 검토하였으며, 돌봄 인력난 우려에 대응하여 정확한 인력 수급 추계 도출을 위한 모형 설계 등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 고용전망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일자리 TF(기재부-고용부)에 참여, 복지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빈일자리 대책 발굴 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매월 일자리 TF 참여(9회)하여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상·하반기 일자리 대책(조기 집행, 사업 확대 등)을 총괄 조정하였습니다.

- 복지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월 1회 집행 점검을 통해 목표 116만개 대비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111.2% 초과 달성)하여 일자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목표/실적) 노인일자리(103만/116.4만), 자활근로(6.9만/6.2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3.9만/3.9만개), 장애인일자리(3.2만/3.5만개)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 인력지원 활성화 등으로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25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333억원 추가 확보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0.9%p 개선했습니다.
 - * 인건비 예산 : ('24년) 8,719억원 → ('25년) 9,052억원(+333억원, +3.8%)
 - ** 가이드라인 준수율 : ('23년) 94.1% → ('24년) 95.3% → ('25년) 96.2%(+0.9%p)
- 근거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간담회 및 처우개선위원회** 개최(6월, 12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 (주요내용)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월 평균 보수액 315만원(기본급 247.4만원, 수당 등 68.3만원),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구성) 복지부 1차관(위원장), 전문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기재부, 고용부 등 15인,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시설 종사자의 휴가·교육 시 종사자를 대체할 인력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 대체인력 지원일수: ('21)45,685일→('22년)46,656일→('23년)51,221일→('24년)51,660일
-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점검(4회), 관계기관 간담회(2회), 워크숍(대체인력 관리자 등 56명)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④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3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 부처 사업계획을 종합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4)을 추진하였습니다.
 - * ('23) 모의적용 연구 → ('24~'25) 시범사업 실시(('24) 8개 지자체, ('25) 17개 지자체)
 - ** (실적) 참여지자체 8개소, 모집인원 210명, 신청인원 464명(220.9%)

-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등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총 241명에게 지역사회 주거 전환 및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확대('23 17개 → '24 30개)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87호 확보

-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반납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사진란 삭제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관련 압류방지통장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다수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국민비서를 통한 장애심사결과 알림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등록증 기능을 고도화 하여 동해남부선 장애인 무임결제 적용,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의 교통카드 기능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위한 '25년도 예산(68억원) 확보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공개*를 통한 장애인 정책 기초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가통계포털(kosis.go.kr)에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통계 등록 및 보도자료 배포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장애인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강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확대 설치(4개소)하였고, '25년 상반기 추가설치를 목표로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경찰청, 지자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 부처별 중복교육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대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 (전문강사 양성) '21년 110명→ '22년 148명→ '23년 194명→ '24년 240명(누적)
 - ** (인식개선 교육기관) '21년 14개소→ '22년 21개소→ '23년 30개소→ '24년 33개소(누적)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장애분야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18개)와 협의 등을 거쳐 부처별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시설은 면적 제한을 삭제** 하였습니다.
 - * (대상확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 ** (면적제한 삭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안마시술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BF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을 BF인증 관리를 위한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건축성능원,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추가 지정(2개소)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최대 월 42만원의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은 최대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기초급여) ('23) 323,180원→('24) 334,810원(+11,630원, 물가상승률 3.6%)

(부가급여) ('23) 8만원→('24) 9만원(+1만원,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또한,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신청 편의 증진을 위해 '24.8월 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장애인의 직업경험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2천명 확대('24. 33,546명)하였으며, 신규 직무 3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 (일자리수) ('22년) 27,546명 → ('23년) 29,546명 → ('24년) 31,546명

** (신규직무) 정신장애특화동료지원 활동, 농-농 케어, 물리치료 보조 3종

-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력 (BGF리테일(CU) MOU, '24.3.)하여 '장애인편의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1호점 제주혼디누림터점 개소(8.26)/ 2호점 평창(11.5), 3호점 부산(12.17) 개소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상승 추세*에 있으며, '23년은 1.07%로 법정 의무 구매 비율(1.0%)을 달성했습니다.

* (우선구매비율) ('21) 0.99% → ('22) 1.01% → ('23) 1.07%

-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25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을 1.1%로 상향*하였고, 미달성 기관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24.8~)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24.2.6), 같은 법 시행령('24.7.9.),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24.7.17.)

- ▲ 민간 연계 업무협약 체결*, ▲ 2024 중증장애인생산물 박람회 (10.10.~11.), ▲ 신규 품목 개발**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 현대캐피탈(주)-전기차 배터리 라이프케어 리워드('24.3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쇼핑몰 내 중증장애인생산물 전용 쇼핑 카테고리 신설·입점('24.4월)

**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안전 트래픽콘, 카스토퍼,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래포

-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4종 확대***('23년 38종 → '24년 42종) 및 교부단가 4종을 인상했습니다.

* 장애인용 카시트,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인상('23년 15,570원 → '24년 16,150원)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전년 대비 8천여명 확대('23년 15.1만 → '24.10월 15.9만명)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가산급여의 대상자 및 급여량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23) 6,000명 → ('24) 10,000명 / 급여량 : ('23) 151.5시간 → ('24) 195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9월~)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24.2.6. 개정 24.9.1. 시행)

- 장애 정도 및 도전적 행동(자·타해)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24.11월~'26.10월)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4.5.28. 개정 24.11.1. 시행)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소진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최대 7일)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 ('23.4월~'24.12월) 전국 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34개소 설치·운영, ('25년)본사업 전환

-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고, 가정과 유사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 (낮활동) 세면·목욕, 취미·여가 지원, 상담 등, (주거생활) 야간돌봄, 안전관리 등

- 서비스 적시 이용과 낮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오픈하우스를 실시하였습니다.
 - * (사전등록제)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단계에서 중도포기를 예방하고, 가정 방문 상담 등 이용자 접근성 제고
 - ** (오픈하우스) 낮선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사전체험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응력 향상
- 긴급돌봄 사업 모니터링 연구* 및 사업적정성 평가 통과** 등 결과를 기반으로 본사업('25년~) 전환을 준비하였습니다.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24.5월)
 - **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2023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통과('24.8월)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활동을 제공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단가**를 확대하였습니다.
 - * ('23년) 주간 10,000명 → ('24년) 주간 11,000명
 - ** ('23년) 시간당 15,570원 → ('24년) 시간당 16,150원
- 도전적 행동(자·타해) 등이 심한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제공('24년 6월~)하였습니다.
 - * (24시간 개별) 낮 활동 지원 + 주거공간·지원인력을 통한 야간돌봄 지원(340명)
 - (주간 개별)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 (주간 그룹형)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 참여 지원(1,500명)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24년 심판청구 652건)
-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부모 교육·상담, 가족휴식을 지원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 하고, 양육기술훈련 수행기관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 (교육) 영유아기 7,932명, 성인전환기 8,527명, 성인권 교육 8,485명('24.11월 기준)

** (수행기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이용인원 1,176명, 제공기관 225개, '24.11월 기준)과 가족 캠프·자율여행(이용자 14,135명, '24.11월 기준)을 지원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재산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지원을 위한 재산관리서비스를 운영('24년 144명, 국민연금공단 위탁)하였습니다.
- 장애아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 돌봄 서비스 연간 제공 시간을 120시간 확대(960→1,080시간)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체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 특성 및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의료·복지·교육 자원 확보 및 연계 등 통합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 ▲연계 자원 확보,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제공, ▲방문진료·재활의료서비스·검진 연계 등 지원, ▲통합건강보건관리, ▲병원 등 외부기관과 센터 간 대상자 연계 등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정기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멘토보건소(16개소)를 운영하여 우수 사례관리 공유 및 확산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업무 효율화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21~'23)하여 개통·운영('24.1월~)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별표3 제7호의2 신설 (2024. 3. 26. 개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대상 및 방문 서비스 횟수 확대 등 제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24.2~)
 - * (지원대상)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중증 →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강화(연 18회 → 연 24회)
(주장애관리 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대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제공하고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추가*로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6개소, 장애친화산부인과 2개소 추가 운영 개시

-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지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 ('23년) 100만원 → ('24년) 120만원

- 권역별 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재활병원을 추가 건립·운영*하였습니다.

* 현재 7개소 운영 중, 2개소(충남, 전북) 건립 추진 중

-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양질의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하고자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 ('23년) 병원 3개소, 센터 2개소 → ('24년) 병원 3개소, 센터 3개소

- 아울러,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1기) 비수도권 8개 권역 15개소('20.10~'24.2) → (2기) 전국 18개 권역 39개소('24.3~'25.12)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를 해소하고 장애 조기 개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23년) 79천명, 1,270억원 → ('24년) 86천명, 1,383억원

- 또한, 장애아동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기준을 상향(6세 미만 → 9세 미만)*하였습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24.1.2. 개정, '25.1.3. 시행)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기존) 소아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 (개선) 불가피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도 가능

⑤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24.12.20).

*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근거 규정 마련,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근거 규정 명확화 등

- 범정부 5개년 사회보장 비전·전략이 담긴「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시행 첫 해를 맞아, 15개 부처 협업을 통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범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안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24년 시행계획,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협력방안

- 전문위원회 및 실무·본위원회의 단계적 검토*를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위원회(3회), 실무위원회(3회), 전문위원회(36회: 기획 7회, 재정 7회, 제도조정 5회, 제도통합 5회, 평가 6회, 통계·행정데이터 6회) 등 총 42회 개최('23년 총 33회 개최)

- 또한, 실무·전문위원장 대상 정기 간담회 개최*, 공동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정책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실무·6개 전문위원장 간담회 8회 개최 및 관련 보도 참고자료 3회 배포

** 2024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이용자 중심 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10.25)

- 사회보장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OECD 국가 간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산출하고 OECD에 제출*하였습니다.

* '20, '21년 확정치 및 '22~'24년 예측치('25.1분기 공표 예정)

-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지출의 산출방식과 분류기준 등을 논의하고 산출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내 재정전문위원회 개최('24.1~10, 총 7회)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공표('24.11.)하였습니다.
- 재정전문위 외 외부위원회*의 별도 검증을 거쳐, 최근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약 40년간('24~'65) 복지지출 추이를 파악하였습니다.
- * 전체회의(2회), 연금분과 회의(2회), 보건·의료분과 회의(3회), 고용·산재분과 회의(4회), 일반재정분과 회의(5회) 등 재정추계위원회 개최(총 16회)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재산기준 추가 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약자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의료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가 수준을 개선하는 등 의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건강검진 수검 등 건강관리 강화, 재가의료급여 사업 내실화 등 지역사회가 중추가 되어 수급권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수급자가 필요도 기반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필수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의료이용체계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발굴체계 및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보다 촘촘하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현 47종) 지속 확대 및 위기정보 발굴모형 정교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 빅데이터 활용 기존 사각지대 발굴체계와 함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기관 확대를 통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AI 초기상담 동시 접속 채널 및 대상자 확대 등 본격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의 복지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자체 복지 공무원은 심층상담과 복지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을 확대하고 (46명→94명), 컨설팅 사례 공유 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분야 확대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배원,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안전망 기반의 민관협력 발굴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적극 발굴 등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더 많은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관계망 형성 및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고독사 정책 추진 및 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고독사 위기변수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지멤버십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 새롭게 시행되는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신규 구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 하여, 국민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화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고, 장애인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장애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발굴, 지원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장애인학대 전문대응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쉼터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상별 참여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유관부처 등과 협력하여 교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25~'29)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설치기준에 대한 홍보 등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민 인식 증대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개최

○ 장애인연금의 지원금액 인상과 공공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 수급자 규모를 연 8천명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단가를 인상*하여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활동지원사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서비스단가) '24년 16,150원 → '25년 16,620원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모니터링 및 연구* 등을 통해 제한적 허용('24.11~'26.10) 이후 연장 여부, 대상자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사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12~25.4.)

○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중증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간) '25.7월~'25.12월(6개월), 2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안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간) '24.10월~'24.3월

○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상담, 가족 휴식 지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장애아 돌봄 서비스 제공 단가를 인상(12,140원→14,140원) 하겠습니다.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장애친화 검진 시설·인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를 해소하고 장애 조기개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규모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 * 86천명, 1,383억원 → 104천명, 1,672억원
-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 미설치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단계적 개원·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제도 관리, 통계기반 등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지역 계획과 연계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중앙·지방의 협력적 역할분담을 지원하겠습니다.
 -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영역별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보장 재정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지향점을 제시하겠습니다.

* OECD에서 국가별 통계 취합 후 '25.1분기 공표 예정

성과지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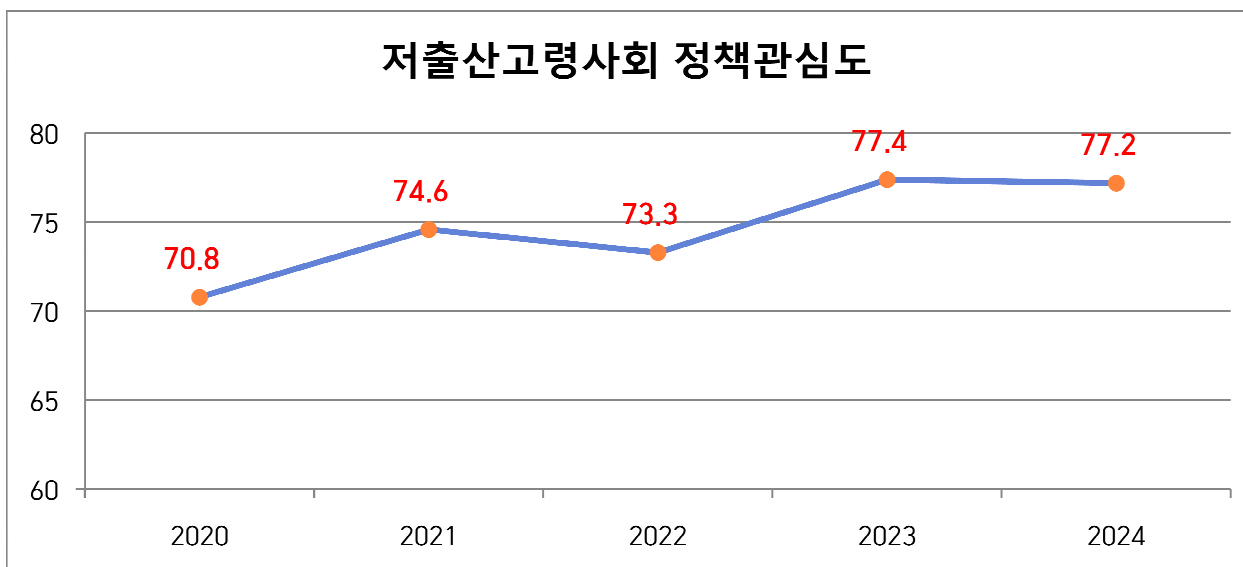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점) 〉

- 개념 : 저출산고령사회대비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긍정응답 평균점수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24년 업무위탁: (주)엠브레인)
- 조사대상 : 전국 20~59세 성인남녀(1,0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측정산식 : 질문의 응답항목을 100점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24년 측정결과

-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항목의 긍정 응답비율 72.0%, 100점환산점수 77.2점



□ 성과분석

- (저출생 대응)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3대 핵심분야(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을 발표, 「인구비상대책 회의」매월 개최, 저출생수석실 신설 및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범정부 설립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 또한, 기혼부부, 미혼청년, 이혼등이 부모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혼등이 맞춤형 지원대책」(12.3) 발표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출산·양육부담경감)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수준 ^{상향*}을 통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영아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 (부모급여, 매월) ('23년)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첫만남이용권, 1회) 출생순위 무관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및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일괄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 등 출산·양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부부당→출산당 25회),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등 난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지원·보호 출산제 시행('24.7),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아동 생명 보호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안정적 노후환경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인 공공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노인 빈곤 완화하였습니다.

- 취약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및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지원 강화하였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 ('22년) 85.7점 → ('24년) 86.9점

○ (양질의 사회서비스제공)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위기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시범실시('24.8월)하였습니다.

* 가족돌봄청년 : 초기상담·일상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 연계, 연 200만원 자가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 온라인 자가진단·초기상담 및 고립 정도에 따른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 돌봄필요 청·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급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등 新복지수요 적극 발굴·지원하였습니다.

* 30일 내외 한시적 가정방문형 돌봄·가사·이동지원 서비스 도입('24.10월 기준 1,604명 이용)

○ (인식개선) 제1차 저출산대책('06년) 이후 매년 지속하여 저출산 대응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24년도에는 무자녀부부, 미혼 청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메인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하였고,

* (매체송출) SBS·tvN 등 방송사 및 유튜브·IPTV·SMR·tvING 등 인터넷 광고 실시

* (실적) 유튜브 조회수 1,100만회 ↑

- 아울러, 국내외 인구정책전문가, 다양한 정책수요자 등 대상으로 ‘한·일·중 인구포럼’, ‘육아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일중 인구포럼(9월, 11월), 육아포럼(9월, 10월, 11월) 등

- (남성육아 확산)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경험을 확산하는 ‘100인의 아빠단*’을 ‘11년부터 모집·운영하였으며, 아이와 함께 놀이미션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빠-자녀 간 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추진경과) ‘11년 전국 100명으로 시작 → ‘19년 시도별 아빠단 모집 → ‘24년 아빠단 2,048명

* (‘24년 아빠단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긍정변화 97.6%, 배우자와의 관계 긍정변화 92%

-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유급휴직기간 확대 등 육아휴직제도 강화와 더불어 100인의 아빠단 활동 등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유도한 결과, 아빠 육아휴직자*가 대폭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자수) 3,053명(‘11) → 50,455명(‘23, +16배) (출처: 통계청 전체육아휴직자)

- (범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교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7개 종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종교적 특성을 기반한 인구교육 및 만남주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7개 종교단체) 한국교회총연합,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

** (주요 프로그램) 한교총, 천도교 등 저출생 등 인구 교육 실시,

조계종 “나는 절로”, 원불교 “맞선캠프” 만남주선 등

- (출생아수 반등) ‘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24년 2분기 이후 전년동월 대비 출생아수 증가(7월 +7.9%, 9월 +10.1%, 10월+13.4%)하였고, 혼인전수도 증가(전년동기대비 '24.3분기 +24%) 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됩니다.
-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출산율과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속도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하고,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26.3월 전국 시행('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5),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도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25.下)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20.6→27.3만명)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이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부정책의 대국민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억불)

□ 성과지표 개요

〈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억불) 〉

- 개념 : 보건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 수출입 통관자료 등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가공한 통계(국가승인통계 아님)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조사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수출 품목
- 조사방법 : 관세청 수출입 통관자료 가공
- 측정산식 : 대외 무역거래 상품분류(HSK) 10단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에 해당하는 717개 품목에 대한 수출액 합계

□ '24년 측정결과

- 바이오헬스 산업 '24년도 수출액은 252.7억불로 '23년도 218.1억불 대비 34.6억불(15.9%) 증가하였습니다.
- 의약품은 '24년도 92.7억불 수출을 달성하여 '23년 75.6억불 대비 17.1억불(22.7%)이 증가하였고,
- 의료기기는 '24년도 수출액이 58.1억불로 '23년도 57.9억불 대비 0.2억불(0.4%) 증가하였으며,
- 화장품은 '24년도 수출액이 101.9억불로 '23년도 수출액 84.6억불 대비 17.3억불(20.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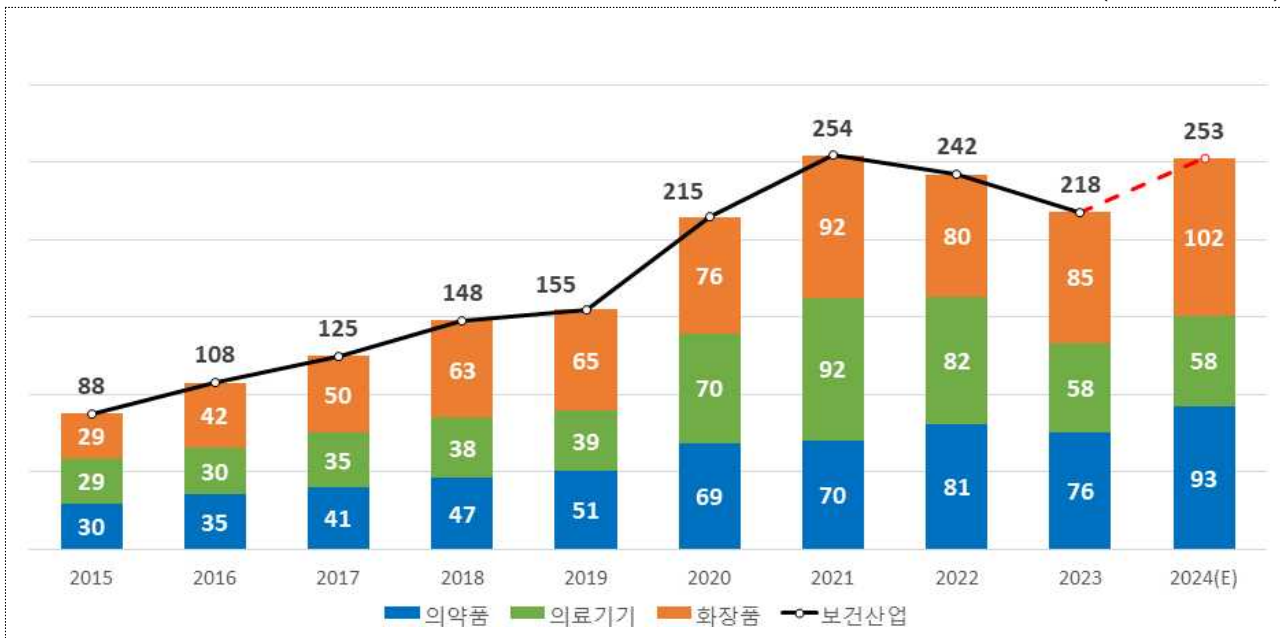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E)년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바이오헬스(계)	21,496	25,449	24,242	21,807	25,271	4.1
의 약 품	6,893	7,042	8,083	7,555	9,268	7.7
의료기기	7,032	9,223	8,206	5,789	5,813	△4.6
화 장 품	7,572	9,184	7,953	8,463	10,190	7.7

주 : 2024년 수치는 연간 잠정치이며, 연간 확정치는 2025년 3월경 발표 예정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재가공

【보건산업 수출 동향(2015~2024(E)년)】

(단위: 억 달러)



□ 성과분석

-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회복세 전환에 따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24.9.13, 제4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하여 추진하여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수출실적은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의약품·화장품 분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 (수출 확대 방안 주요내용) 수출 목표치 상향 235→2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전문가 컨설팅,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하여 바이오헬스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24년 추진 현황) KHIDI-다케다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2월),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4월), 암젠 골든티켓(5월, 11월~), BIO KOREA(5월),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 익스프레스웨이(11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11월) 등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24.9.13)의 적극 추진을 통해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글로벌 판로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K-바이오·백신 펀드(24, 1~2호 총 3,06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1천억 원 이상 투자를 추진하고,
 - EU, 미국, 중국 등 자국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 * FDA 근무 경력자 초빙 컨설팅 및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의료기기 수출 전주기(시험~마케팅) 지원, 수출 화장품 위주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안전성평가서 작성 실무 교육 실시 등
 - 수출 국가 현지 전문가(GPKOL: 32개국, 277명)를 활용하여 기술 거래·임상·GMP·인허가 등을 위한 전주기 컨설팅(기초→전문→심화)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 아시아 세 번째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랫폼(JLABS)을 구축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겠습니다.
- 또한, 스타트업 초기단계 혁신기술 발굴, 연구공간·실험장비 및 글로벌기업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 美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보스턴 CIC 입주를 지원하며,
 - BIO KOREA(5월), 주요 제약·의료기기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화장품 해외 홍보관 확대 및 한류박람회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